Beyond the Ideal port

국제물류 비즈니스 전진기지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투자가이드

Gwangyang Port Free Trade Zone Guidebook



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Yeosu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KOREA CONTAINER TERMINAL AUTHORITY



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Yeosu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KOREA CONTAINER TERMINAL AUTHORITY

국제물류비즈니스전진기지, 광양항

Gwangyang Port, your success partner

세계적인 물류 경쟁력을 약속합니다.



광양항은

천혜의 항만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주요 간선항로의 중계지입니다.
넓은 배후부지(388만㎡)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장 저렴하게 임대 해드립니다.
(우대임대료 : 30원/㎡,월)

투자문의 : 061) 797-4547~8

Contents

Ⅰ.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입주안내

1. 배후물류단지 현황 및 입주안내 **p.04**
2. 광양항 황금물류센터 현황 및 입주안내 **p.08**
3. 광양항 이용시 혜택 **p.12**
4. 국제물류 비즈니스 모델 소개 **p.14**
5.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선박기항 현황 **p.16**

Ⅱ. 광양항 운영 및 개발현황

1. 광양항 비전과 특징 **p.22**
2.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현황 **p.24**
3. 광양항 개발사업 **p.26**
4. 광양항 3단계 2차 개발사업 **p.28**
5. 광양항 업무지원시설(마린센터) 건립사업 **p.30**
6. 복합운송지원창고 **p.32**
7. 냉동 · 냉장창고 **p.33**
8. 광양항 배후수송시설 현황 **p.34**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투자정보 Q&A p.36

광양항 이용 관련기관 연락처 p.76





Ⅰ.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입주안내

1. 배후물류단지 현황 및 입주안내 **p.04**
2. 광양항 황금물류센터 현황 및 입주안내 **p.08**
3. 광양항 이용시 혜택 **p.12**
4. 국제물류 비즈니스 모델 소개 **p.14**
5. 광양항 '컨부두 선박기항 현황 **p.16**

Gwangyang Port
Free Trade Zone Guidebook

01. 배후물류단지 현황 및 입주안내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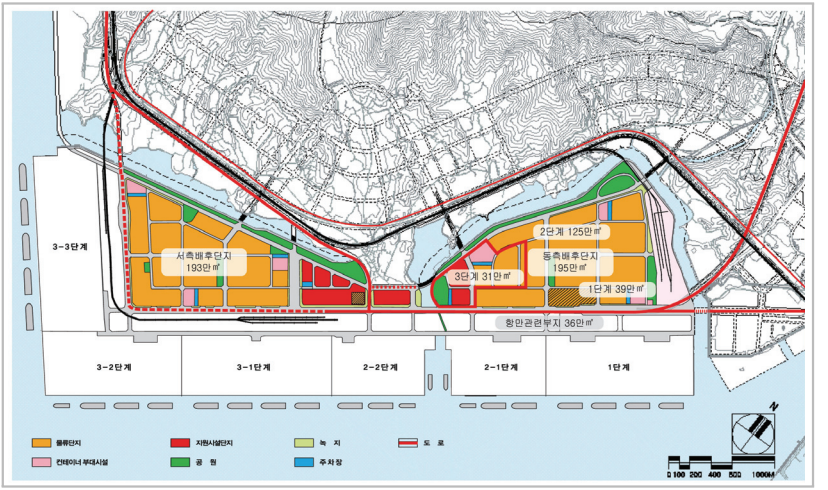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현황

구 분	항만배후부지	동 측	서 측
조성면적	388만㎡	195만㎡	193㎡
총사업비	7,126억원	3,274억원	3,852억원
사업기간	2003~2011	'03. ~ '08.	'06. ~ '12.
사업시행	국토해양부, 광양시	국토해양부, 광양시	국토해양부

※ 동측 총사업비 ☞ 광양시 투자 419억원 포함

광양항 동측 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 현황

※ '09. 4월 기준

부 지	입주기업	입주면적(㎡)	시설현황(㎡)	비 고
1단계 (5개사)	로지스올인터내셔널㈜	33,015.9	물류센터 9,787	운영중
	케이카티로지스틱스	14,595.7	물류센터 9,900	건립중
	(주)동부광양물류센터	30,068.8	물류센터 9,966	운영중
	국제석재가공물류센터	66,081.5	물류센터 20,000	〃
	대한통운(주)	23,140.0	물류센터 9,903	〃
	소 계	**166,901.9**	**59,556**	
2-1단계 (4개사)	동부복합물류㈜	65,929.6	물류센터 9,805	운영중
	뫼비우스로드㈜	49,193.6	정비 물류센터 3,130	〃
	동방광양물류센터㈜	33,042.1	물류센터 4,604	건립중
	로지스올인터내셔널(주)	66,018.5	저온 물류센터 9,917	〃
	임대모집 중	**72,150.6**	–	–
	임대모집 중	**32,289.1**	–	–
	소 계	**318,623.5**	**27,456**	
2-2단계 (6개기업)	동부광양스틸유통센터㈜	103,405.4	물류센터 33,049	건축예정
	비아이디씨㈜	34,213.3	물류센터 12,264	〃
	(주)광양종합물류	16,529.7	물류센터 5,726	〃
	㈜대현우드	80,100.4	물류센터 26,800	〃
	삼성테스코(주)	105,064.6	물류센터 47,844	〃
	아이씨모터스㈜	22,310.9	정비 물류센터 2,362	〃
	임대모집 중	**38,000.2**	–	–
	임대모집 중	**75,051.7**	–	–
	소 계	**474,676.2**	**128,045**	
황금물류센터 (5개사)	세방광양물류센터㈜	7,968	44,325	운영중
	삼성테스코㈜	7,968		〃
	동부광양물류센터㈜	6,430		〃
	로지스올인터내셔널㈜	5,902		〃
	비아이디씨㈜	6,681		〃
	소 계	**34,949**	**44,325**	
합 계		**995,150.6**	**259,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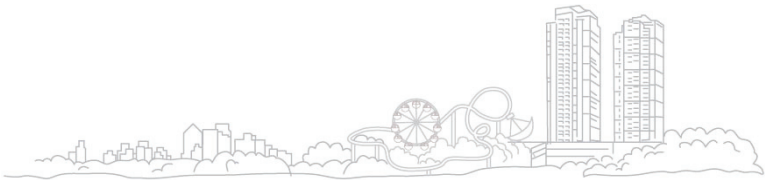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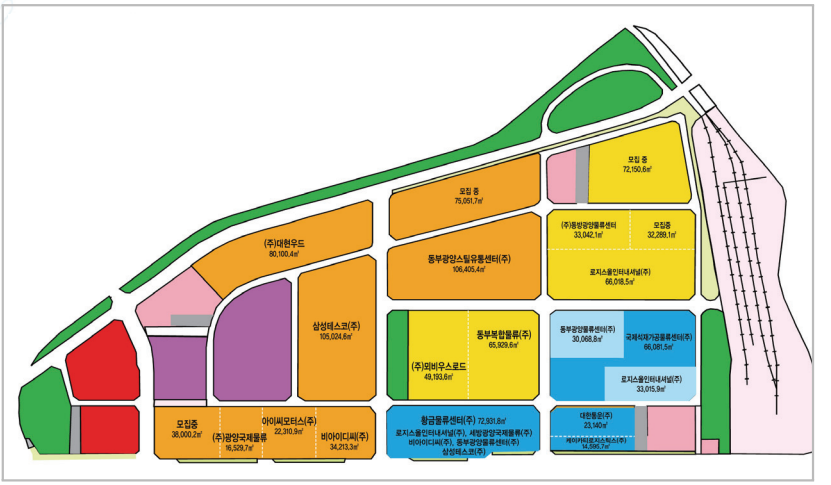

임대조건

- 임대기간 : 50년 이내 (매 3년마다 계약 갱신 체결)
  ※ 광양항 활성화에 기여하는 입주업체의 사업운영을 최대한 보장
- 임대료

구 분	조 건		임 대 료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기본임대료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기업	㎡당 월200원
	우대임대료	외국인투자기업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당 월30원
	공시지가 임대료	입주기업중 자유무역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판단하는 기업	공시지가×10/1,000 (국유재산법)

※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 , 2007. 7. 30.)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이후의 임대료는 별도 공고

입주자격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법 률	입주 가능 업종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동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물품의 하역 · 운송 · 보관 · 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① 국제운송주선 · 국제 선박거래, 포장 · 보수 · 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②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 · 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관련 사업 ③ 연료 · 식수 · 선식 및 기내식 등 선박 ·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 ④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광양항 서측 배후물류단지

- 사업기간 : 2006 ~ 2012
- 총사업비 : 3,875억원
- 사업내용(조성공사)

구 분	전 체	2008	2009	~2012
조성공사	193만㎡	60만㎡	63만㎡	73만㎡

※ 2010년 임대공고(공단 홈페이지) 예정

※ 본 공고의 구체적 사항 및 신청서 등 제반제출 서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내방 또는 홈페이지(http://www.kca.or.kr) 『입찰정보』 란의 공고 참조





02. 광양항 황금물류센터 현황 및 입주안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 2007. 12.
- 사 업 비 : 440억원
- 사업내용 : 연면적 44,326㎡(물류동 33,266㎡, 사무동 4,957㎡, 램프웨이 3,234㎡, 주행로 869㎡)

■ 임대조건

- 임대료 : 510원 / 월 · ㎡
- 전용사용기간 : 50년이내(30년 사용후 상호협의 20년 연장)

※ 국토해양부(2007. 7. 30.)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이후의 임대료는 별도 공고



향후 증축 계획

연도별 증축 계획

- 기본실시설계 용역 : 2010. 1. ~ 12.
- 증축 공사시행 : 2011. 1. ~ 12.
- 향후 증축 예정

구 분	물류센터(2~3층) 램프웨이2층	오피스 빌딩	소 계	비 고
연면적	61,338.96㎡	5,352.61㎡	66,691.57㎡	· 물류센터 지상 2층 좌우측 일부 3층 · 램프웨이 동측 및 서측 수직증축 · 오피스빌딩 : 지상 5층, 지하 1층

※ 입주가능 시기 : 2012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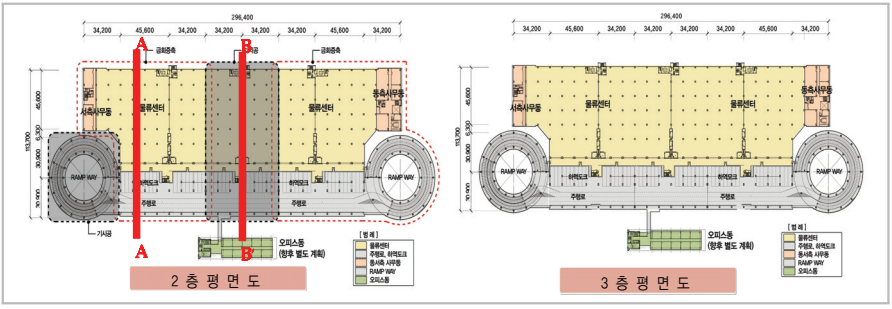


광양항동측배후단지
(2단계)조성공사
푸른 광양 배후단지
시행청 : 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입주업체 현황

입 주 기 업	구역 및 면적조정	비 고
동부광양물류센터(주)	①구역 (6,430㎡)	1층
세방광양국제물류(주)	②+③구역 (7,968㎡)	1층
삼성테스코(주)	④+⑤구역 (7,968㎡)	1층
로지스올인터내셔널(주)	⑥구역 (5,902㎡)	1층
비아이디씨(주)	2층 일부 (6,681㎡)	2층 일부

임대구역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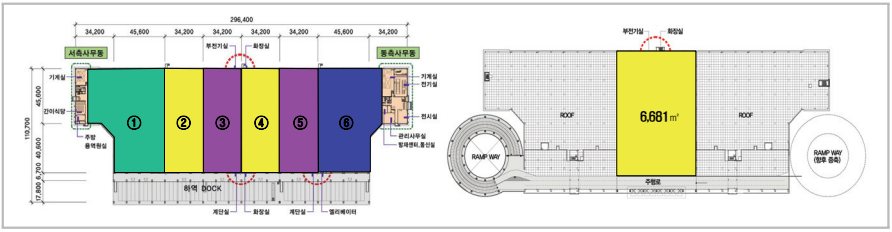



03. 광양항 이용시 혜택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은 광양항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도적 이점이 있습니다.

- 광양항 선박 입 · 출항료 · 접안료 · 정박료 100% 면제
  - 광양항에 입 · 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선
- 광양항 화물 입 · 출항료 100% 면제
  - 광양항에 입 · 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의 컨테이너화물
- 컨테이너세 없음
- 장기간 터미널 내 무료장치기간 제공(최장 30일)
- 부산항에 비해 화물 반출 · 입 시간 단축(광양 30분, 부산 60~90분)

물류비가 저렴합니다.

- 호남권·중부권·수도권지역 화주들이 광양항을 이용할 경우 모든 항로에서 부산항 이용시에 비해 수출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음
- 20피트 수출 컨테이너 화물
  - 중 국 행 : 호남권 27.8%, 중부권 15.6%, 수도권 10.5% 각각 저렴
  - 일 본 행 : 호남권 19.5%, 중부권 11.0%, 수도권 7.4% 각각 저렴
  - 동남아행 : 호남권 17.2%, 중부권 9.7%, 수도권 6.5% 각각 저렴

구 분	북미행		유럽행		중국행		일본행		동남아행	
	부산	광양	부산	광양	부산	광양	부산	광양	부산	광양
호남권	100	91.1	100	89.2	100	72.2	100	80.5	100	82.8
중부권	100	94.8	100	93.8	100	84.6	100	89.0	100	90.3
수도권	100	96.7	100	95.9	100	89.5	100	92.6	100	93.5

※ 한국무역협회 자료('05. 7.)

- 철도운임 비교

(단위 : 741원*거리/40피트)

착 지	광 양	부 산	비 고
의 왕	274,320	302,180	-27,860
청 주	212,070	239,930	

- 해상운송의 경우 광양항은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은 물론 홍콩, 싱가폴항과의 거리가 부산항보다 짧아 운항시간 및 운항비가 절감됨
  - 27개 선사가 주68항차 운항('09. 2월 기준)

"광양항 마일리지 카드제" 도입

- 시행시기
  - '06. 1. 1.부터 컨테이너 화물량이 약 300만TEU 도달 시까지
- 세부(지원)내용
  - 광양항을 이용한 신규 "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물량창출 지원금을 지급
    - 수출 · 입 화물 : 1TEU당 화주, 포워더에게 1만원, 선사에게는 2천5백원
    - 환 적 화 물 : 1TEU당 선사에게 5천원
      ※ 선·화주, 포워더에 대한 물량창출 지원액을 향후 50% 상향 조정예정
- 지원대상 : 광양항을 이용한 선사 및 해당선사와 최종 계약한 화주 또는 포워더 중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전년에 비하여 신규물량("적" 컨테이너)이 있을 것
  -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 합병 · 인수되거나, 법인명이 변경된 행위
    - 광양항과 타 항만 간 기항지를 해마다 변경하는 행위
    - 지원금을 목적으로 업체간 화물을 전이하는 행위
- 지원방법
  - 해당업체에서는 「광양항 사랑 수협카드」를 발급받아 신규물량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카드에 적립
  - 적립된 지원금액을 현금과 같이 사용한 후 잔액은 수협에서 해당 업체 구좌로 지급
- 지급시기
  - 매년 3월, 6월, 9월, 12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수협카드에 점수화
    - 해당업체 구좌이체는 업체의 신청(→ 수협)에 의해 처리

선사 인센티브제 확대

- 신규선사 : 초년도 50% 하역료 지원
- 기존선사 : 증가물량 또는 처리 물량 기준 하역료 기준
  신규항로 선박, 광양항 단독기항 선박('06~ '08)
- 기타 부산기선 및 피더선사(한 · 중 · 일)의 연간 처리 물량에 대해 20% 감면 (신규 피더선 50% 감면)



04. 국제물류 비즈니스 모델 소개

■ 모델 활용
-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내에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투자시 한 · 중 · 일 국제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활용
- 중국기업의 비즈니스 패턴과 광양항 및 배후물류단지의 장점을 활용
  - 중국이 2010년 약 9,0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물류시장으로 성장 예상
  - 동북아 역내 물류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 · 중 · 일 해운 항만물류정책의 변화와 경쟁 가속화 지속

광양항 이용 수출입 비즈니스 모델

물류비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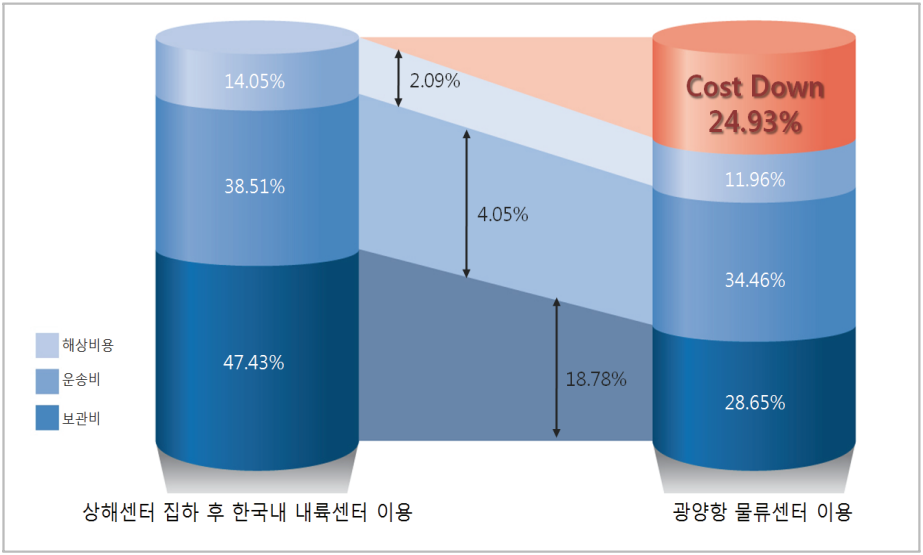

리드타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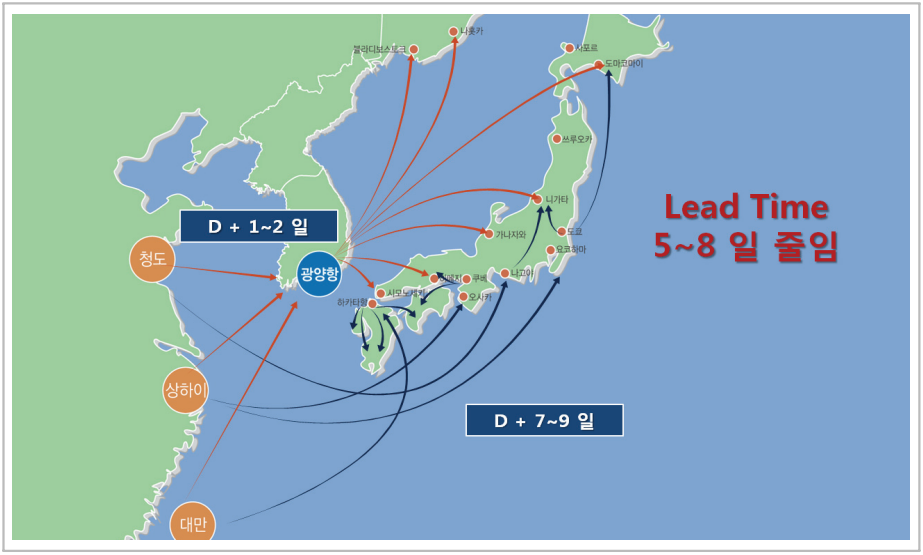

05.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선박기항 현황

(2009. 3. 26. 기준)

■ 동남아 항로 터미널운영사 : KIT/ 동부 / GICT / 대한통운

운 항 항 로	운항선사	선 명	적재가능 TEU	입항일	출항일	선적문의
인천-광양-부산-기륭-카오슝-타이창-홍콩-싱가폴-페낭-포트클랑-파시르 구당-켓 라이	완하이라인	WANHAI 313/ 315/ 306/ 506	1300	일	일	061-798-4537
인천-광양-부산-울산-기륭-카오슝-타이창-홍콩-싱가폴-페낭-포트클랑-파시르 구당-켓 라이	완하이라인	WANHAI 202/ 203/ 207	1300	금	금	061-798-4537
부산-광양-타이페이-타이창-카오슝-마닐라	에버그린	EVER PEACE/ PEARL	1700	토	토	061-793-0211
부산-광양-기륭-타이창-홍콩-호치민	TS라인	TS HOCHIMINH/ KEELUNG/ TAICHUNG	1200	목	목	02-3701-1800
광양-상하이-홍콩-파시르 구당-싱가폴-포트클랑-부산-울산	고려해운	KMTC SINGAPORE/ KEELUNG ALTAVIA	1860	목	목	061-793-0211
광양-울산-부산-홍콩-싱가폴-방콕-람차방-홍콩	흥아해운	HEUNG-A ASIA/ DRAGON BUXHILL	920	화	화	061-794-0863
울산-부산-광양-홍콩-하이퐁-심천(세코우)-홍콩-울산	흥아해운	HEUNG-A HONGKONG/ SINGAPORE	1200	화	화	061-794-0863
광양-홍콩-자카르타-홍콩-닝보-상하이-부산-광양	흥아해운 장금상선 T.S Line	SINOKOR SHANGHAI TS SINGAPORE STX ASIA	2000	토	토	061-794-0863 061-794-7748 061-791-4728
대련-광양-칭다오-싱가폴-파시르 구당	PIL	KOTA HASIL / SEGAR / PEKARANG	1088	월	월	061-791-6073
부산-광양-홍콩-호치민-싱가폴-파시르 구당-홍콩-부산	한진해운	HANJIN SURABAYA / MANILA	1700	일	일	061-760-7715
	STX	OCEAN MERMAID	1700			061-791-6540
부산-광양-홍콩-방콕-람차방-홍콩-상하이-부산	한진해운	HANJIN LAEMCHABANG	1364	월	월	061-760-7715
	STX	STX QINGDAO	1740			061-791-6540
	고려해운	WARNOW BELUGA	1300			061-793-0211
부산-광양-하이퐁-홍콩-상하이	고려해운	LANTAU BAY	700	토	토	061-793-0211
	STX	LANTAU BREEZE	1049			061-791-6540
오사카-모지-하카타-부산-광양-기륭-카오슝-홍콩-심천(세코우)-싱가폴-포트클랑-파시르 구당-카오슝-홍콩-하문(샤먼)-오사카	양밍라인	YM XINGANG1 / INSTRUCTION / SKY / IDEALS	1200	월	월	02-2188-2501

■ 동북아 항로 터미널운영사 : KIT/ 동부 / GICT / 대한통운

운 항 항 로	운항선사	선 명	적재가능 TEU	입항일	출항일	선적문의
부산–광양–상하이–닝보	EAS	TAI PING	800	목	목	02-706-7921~4
광양–부산–대련–칭다오	동영해운	DAN JIANG	700	토	토	061-653-0755
부산–울산–광양–닝보–상하이	남성해운	KOREA STAR CHINA STAR	900	수	수	061-798-4500
부산–울산–광양–칭다오–대련	남성해운	STAR UNIX / APEX	700	금	금	061-798-4500
부산–울산–광양–닝보–상하이	남성해운	STAR MARINER / CARRIER	700	일	일	061-798-4500
부산–광양–닝보–상하이	시노트란스	BRIGHT DAY	200	일	월	02-3788-8200
부산–광양–다펑–상하이–모지–하카타	CCL	SHIMANAMI	500	수	수	061-794-8765
인천–부산–울산–광양–기룽–홍콩–황푸–심천(세코우)–홍콩–기룽–인천	고려해운	CAPE CREUS MEDBAYKAL	900	월	월	061-793-0211
광양–상하이–닝보–부산–울산	고려해운	SUNNY SPRUCE / PALM	450	목	목	061-793-0211
부산–광양–산터우–연태–하문(샤먼)–부산	흥아해운	HMNL HBKK	500	일	일	061-794-0863
광양–군산–상하이–부산–울산	흥아해운	DUBAI WORLD GREEN ACE	500	목	목	061-794-0863
광양–부산–고베–오사카 (by weekly)	흥아해운	HEUNG-A ULSAN	500	금	금	061-794-0863
광양–부산–마산–시모노세키–하카타	장금상선	KOREX PUSAN	200	토	토	061-794-7748
모지–광양–부산–요코하마–도쿄–닝보	장금상선	GOLDEN EXPRESS/ WING	584	금	금	061-794-7748
광양–상하이–마닐라–장호우–하문(샤먼)–복주–하카타–모지–부산	SITC(HYS)	TRIUMPH SITC KOBE	500	목	금	02-0321-2501
인천–광양–부산–상하이–인천	머스크라인	CAPELLA	1000	목	목	061-797-6932
광양–마산–부산–오사카–고베	남성해운	CARINA STAR	706	금	금	061-793-0755
부산–울산–마산–광양–신강–부산	남성해운	GLORY STAR	342	월	월	061-793-0755
광양–모지–닝보	MSC	IMMACOLATA	1300	수	수	061-410-2725
부산–광양–신강–대련–부산	한진해운	HANJIN SEMARANG	480	수	수	061-760-7715
광양–닝보–장자강–부산–울산	장금상선	JIFA BOHAI	440	목	목	061-794-1422
광양–대련–칭다오–부산–울산	장금상선	GOLDEN TRADE	1276	목	목	061-794-1422
광양–텐진–부산–울산	장금상선	ORIENTAL CAREER	950	수	수	061-794-1422

부산–광양–닝보–상하이–부산–울산–보스토치니–울산–부산	장금상선	GOLDEN COMPANION / MERCHANT1	1550	수	수	061–794–1422
부산–광양–난징–부산	시노트란스	YU FENG	700	일	일	02–3788–8200
부산–광양–롄윈강–칭다오–석도(쉬다오)–부산	SITC(HYS)	SITC NINGBO/ YOKOHAMA	800	수	수	02–0321–2501
광양–마산–부산–요코하마–도쿄–시미즈–나고야–요카이치–부산–남산	STX팬오션	STX TOKYO/ YOKOHAMA	700	금	금	
광양–칭다오	STX팬오션	STX TOKYO / YOKOHAMA	700	월	월	
광양–신강–대련–부산–울산	천경해운	SKY PRIDE	962	목	목	061–791–4726
광양–신강–대련–부산–울산	STX팬오션	BRIGHT GOLD, SILVER OCEAN	1200	목	목	061–791–6540

북미 항로

터미널운영사 : KIT/ 동부 / GICT / 대한통운

운 항 항 로	운항선사	선 명	적재가능 TEU	입항일	출항일	선적문의
부산–광양–카오슝–연태–홍콩–상하이–부산–도쿄–타코마–시애틀–벤쿠버–타코마	현대상선	HYUNDAI KINGDOM / DOMINION / NATIONAL / REPUBLIC / PATRIOT	4411	수	수	061–798–4525
광양–부산–롱비치–오클랜드–닝보–상하이 (Eest Bound)	현대상선	HYUNDAI TACOMA / HONGKONG / TOKYO / KENNEDY / DISCOVERY/ DYNASTY	4400	토	일	061–798–4525
광양–부산–롱비치–오클랜드–닝보–상하이 (West Bound)	현대상선	HYUNDAI TACOMA/HONGKONG/ TOKYO/ KENNEDY/ DISCOVERY/ DYNASTY	4400	일	일	061–798–4525
광양–연태–홍콩–카오슝–부산–롱비치–오클랜드–시애틀–부산	현대상선	HYUNDAI NATIONAL/ / DOMINION / PATRIOT / KINGDOM / REPUBLIC	4400	월	월	061–798–4525
부산–광양–고베–시미즈–나고야–요코하마–더치하버–로스엔젤레스–오클랜드–요코하마–부산	머스크라인	MAERSK DAVENPORT SL INTREPID / COMET/ LIGHTNING / CHARGER	4900	일	일	061–797–6932
상하이–부산–시애틀–포트랜드–벤쿠버–광양–홍콩	한진해운	HANJIN MADRID/ BERLIN, / LONDON / WASHINGTON	5300	월	화	061–760–7715
상하이–부산–시애틀–포트랜드–벤쿠버–광양–홍콩	COSCO	COSCO TIANJIN, COSCO DALIAN, COSCO XIAMEN	5800	월	화	051–466–1171
연태–상하이–광양–부산–롱비치–오클랜드–시애틀–부산–연태	한진해운	HANJIN YANTIAN / BALTIMORE/ DALLAS / MIAMI	7471	화	수	061–760–7715
로스앤젤레스–광양–상하이–닝보–오클랜드	양밍라인	YM MARCH/ WEALTH/ SUCCESS/ GREAT	5500	목	목	02–2188–2501

유럽 항로

터미널운영사 : KIT/ 동부 / GICT / 대한통운

운 항 항 로	운항선사	선 명	적재가능 TEU	입항일	출항일	선적문의
광양–부산–카오슝–홍콩–싱가폴–수에즈운하–로테르담–함부르크–템즈포트–수에즈운하–콜롬보–싱가폴–홍콩–카오슝–하카타–광양	현대상선	HYUNDAI COLOMBO/ BANGKOK/SPLENDOR/I BUSAN/ JAKARTA/ SINGAPORE/ LOYALTY/ MERCURY	5500	토	일	061-798-4525
브레머하벤–로테르담–펠릭스토우–사라라–부산–신강–대련–칭다오–광양–상하이–브레머하벤	머스크라인	MAERSK SALINA ADRIAN MAERSK MAERSK SAVANNAH SL ILLINOIS CHARLOTTE MAERSK ARTHUR MAERSK SALLY MAERSK SVENDBORG MAERSK CLEMENTINE MAERSK MAERSK SALINA ANNA MAERSK	8000	금	금	061-797-6932
광양–부산–상하이–닝보–치완–포트클랑–수에즈운하–이스탄불–콘스탄자–오데사–일리체브스크–다미에타–포트클랑–신강	CMA-CGM	CMA CGM AZURE /CORA/TURQUOISE/QUART Z/ONYX VILLE DE ORION/ ALCAZAR/ SCALA BUXSTAR/ CHATEA D'IF	3000	월	화	051-460-5713
부산–광양–대련–신강–상하이–홍콩–연태–싱가폴–포트클랑–수에즈운하–사우드햄튼–함부르크–로테르담–쩨브뤼헤–르하브르–몰타–수에즈운하–치완	CMA-CGM	CMA CGM VELA/ JADE / PARSIFAL/M BUTTERFLY /M THALASSA C DON GIOVANNI HYUNDAI BRAVE /FAITH MAERSK ALGOL	9000	목	목	051-460-5713
함부르크–로테르담–펠릭스토우–싱가폴–카오슝–신강–광양–부산–연태–싱가폴	한진해운	HANJIN SHENZEN/ XIAMEN/MUMBAI/PORTLAN D/CHONGQING/BUDAPEST	6650	금	토	061-760-7715

중남미 항로

터미널운영사 : KIT/ 동부 / GICT / 대한통운

운 항 항 로	운항선사	선 명	적재가능 TEU	입항일	출항일	선적문의
신강–칭다오–닝보–상하이–광양–요코하마–발보아(파나마)–라자로카르데나스(멕시코)–요코하마–신강	머스크라인	MAERSK SEMBAWANG SAFMARINE KOMATI MAERSK KYRENIA SAFMARINE KARIBA SL MOTIVATOR MAERSK MYTILINI/ KOTKA /MATANE/ KINLOSS SAFMARINE KOMATI MAERSK SEBAROK/ SERANGOON	6400	토	일	061-797-6932

중동 항로

터미널운영사 : KIT/ 동부 / GICT / 대한통운

운 항 항 로	운항선사	선 명	적재가능 TEU	입항일	출항일	선적문의
홍콩–광양–부산–기륭–홍콩–연태–싱가폴–포트클랑–두바이–카라치–싱가폴–홍콩–광양	현대상선	HYUNDAI COMODO/ BARON/ ADMIRAL / DUKE /EMPEROR	2174	목	목	061–798–4525
광양–칭다오–닝보–홍콩–싱가폴–자발알리–푸자이랄–싱가폴–카오슝–부산	APL MOL	APL GERMNY/ IRELAND MOL INTEGRITY APL LIBERTY/ HONG KONG/NORWAY	4400	일	월	061–794–1700
자와칼랄네루(인도)–카심(파키스탄)–싱가폴–홍콩–광양–부산–하카타–홍콩–연태–탄중팔레파스–자와칼랄네루(인도)	머스크라인	NEDLLOYD EUROPA / AFRICA / OCEANIA / ASIA / AMERICA	3604	수	목	061–797–6932
광양–부산–카오슝–홍콩–자발알리–밴다르 아베스–상하이	시스코코리아	TUCHAL, DECRETIVE, FIRST OCEAN, SABALAN	6500	금	토	051–636–0071

연안운송

터미널운영사 : KIT/ 동부 / GICT / 대한통운

운 항 항 로	운항선사	선 명	적재가능 TEU	선적문의
광양–인천–부산 (주3회)	㈜한진	HAN PO	200	061–797–6305
광양–군산–광양 (주2회)	㈜한진	HAN SE	200	061–797–6305





Ⅱ. 광양항 운영 및 개발현황

1. 광양항 비전과 특징 p.022
2.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현황 p.24
3. 광양항 개발사업 p.26
4. 광양항 3단계 2차 개발사업 p.28
5. 광양항 업무지원시설(월드마린센터) 건립사업 p.30
6. 복합운송 지원창고 p.32
7. 냉동 · 냉장창고 p.33
8. 광양항 배후수송시설 현황 p.34

Gwangyang Port

Free Trade Zone Guidebook



01. 광양항 비전과 특징

비 전

- 동북아 최대의 물류중심항만 성장
- 세계 최고의 항만서비스 제공
- 컨테이너 1,245만TEU 처리 달성

특 징

- 아시아-북미-유럽을 연결하는 국제물류 네트워크 중심성과 중개성을 보유한 항만
- 조강생산 세계1위의 광양제철소와 국제 최대의 석유화학단지를 갖춘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고도화된 산업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한 세계적인 항만
- 총 34선석의 컨테이너부두와 388만㎡의 광활한 배후물류단지를 개발함으로써 국제물류 비즈니스 거점지 및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성장

물동량 수요('05 예측)

- 2011년도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524만TEU(환적 276만TEU)로예측되었으며, 연평균증가율('05~'11)은 23.7%(환적 41.8%)

구 분		2000	2005	2011	2015	2020
전국 총물동량[백만톤] (시설소요량)		834 (517)	1,003 (694)	1,404 (1,017)	1,609 (1,186)	1,880 (1,429)
전국 컨테이너량[만TEU] (환적물동량)		606 (117)	1,522 (553)	2,710 (1,121)	3,566 (1,509)	4,741 (2,134)
광양	전체화물량[백만톤] (시설소요량)	139 (74)	177 (100)	267 (170)	324 (221)	393 (283)
광양	컨테이너[만TEU] ('컨' 환적)	68 (6)	146 (34)	524 (276)	828 (502)	1,200 (771)
광양	처리능력[만TEU]	160	388	685	885	1,245

연차별 선석 확보계획

구 분	계	'97	'01	'04	'07	'08	'09	'11	'15	'20
컨 부두	34선석	(1단계) 4/4	(2-1) 4/8	(2-2) 4/12	(3-1) 4/16	-/16	-/16	(3-2) 4/20	3-3 5/25	율촌 9/34
컨 처리능력	1,245만TEU	160	274	388	548	548	548	685	885	1,245
일반부두	4선석	-	-	-	-	(중마) 2/2	(율촌 산단) 1/3	(율촌 산단) 1/4	-/4	-/4
일반화물 처리능력	265만톤	-	-	-	-	120	180	240	252	265

일반현황

연혁

- 1969. 4. 17. : 삼일항 개항
- 1986. 12. 5. : 광양항 개항(삼일항 흡수통합)

항세

- 항내 정온 수면적 : 145.19㎢
- 조 위 : 간만의 차 3.822m(평균수면 1.911)

사업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02. 광양항 컨테니너터미널 운영현황

단계별 운영

구 분	합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3-1단계
선석수	5만톤급x12선석 2만톤급x4선석	4천TEU(5만톤급) x 4선석	4천TEU(5만톤급) x 2선석, 2천TEU(2만톤급) x 2선석	4천TEU(5만톤급) x 2선석, 2천TEU(2만톤급) x 2선석	4천TEU(5만톤급) x 4선석
개 장	1998	1998. 07	2002. 04	2004. 10	2007. 07
운영사	-	GICT (4천TEU×2선석) HKT (4천TEU×1선석) KIT (4천TEU×1선석)	동부건설 (4천TEU×2선석, 2천TEU×2선석)	KIT (4천TEU×2선석, 2천TEU×2선석)	대한통운 (4천TEU×4선석)

※ GICT(세방기업+한진해운), HKT(한국허치슨터미널<주>), KIT(한국국제터미널<주>)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구 분	'04년 실적 (A)	'05년 실적 (B)	'06년 실적 (C)	'07년 실적 (D)	'08년 실적 (E)	전년 대비 (E/D)
합 계 ("컨" 부두)	1,321,865 (359,910)	1,441,259 (342,795)	1,755,813 (447,540)	1,722,676 (313,623)	1,810,164 (321,958)	5.1 % (△2.7%)
세방기업	224,244 (36,420)	251,638 (51,689)	251,945 (43,930)	187,602 (7,013)	189,822 (11,308)	1.2 % (61.2%)
한진해운	270,386 (70,287)	268,089 (68,262)	300,256 (84,913)	321,314 (80,593)	333,342 (51,378)	3.7 % (△36.2%)
HKT (한국허치슨)	141,584 (1,963)	124,665 (2,291)	122,777 (15,475)	72,241 (3,647)	11,141 (16)	△84.6 % (△99.6%)
동부건설	126,729 (1,993)	165,174 (7,240)	201,851 (11,077)	206,185 (1,894)	185,654 (5,395)	△10.0 % (184.8%)
KIT (한국국제터미널)	162,711 (38,768)	256,510 (40,500)	385,697 (39,565)	394,860 (35,014)	456,742 (39,889)	15.7 % (13.9%)
대한통운	396,211 (210,479)	375,183 (172,813)	493,287 (252,580)	540,474 (185,462)	633,463 (213,972)	17.2 % (15.3%)

※ ( )은 환적 물량

컨테이너선 기항('09. 2월 현재)

- 국내 · 외 27개 선사가 주 73항차 기항
  - 선 사 : 내국적 선사 10개사, 외국적 선사 17개사
  - 항 로 : 아시아(50), 미주(7), 중남미(2) 유럽(5), 중동(4), 연안(5)
- 기항 선사명
  - 국내 : 현대상선, 한진해운,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두우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STX 등
  - 국외 : 머스크라인, APL, 에버그린, 양민라인, 완하이라인, MSC, PIL, CMA-CGM, 이리슬라인 등

지역별 컨테이너 처리실적

(단위 : TEU,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032,426	1,146,560	1,315,451	1,439,896	1,753,922	1,719,563	△2.0
(비 중)	(100.0)	(100.0)	(100.0)	(100.0)	(100)	(100)	
일본지역	73,797	69,568	82,857	100,876	93,137	79,079	△15.1
(비 중)	(7.1)	(6.1)	(6.3)	(7.0)	(5.3)	(4.6)	
극동아 지역	541,352	606,761	707,076	668,163	608,900	574,896	△5.6
(비 중)	(52.4)	(52.9)	(53.8)	(46.4)	(34.7)	(33.4)	
동남아 지역	89,844	123,178	114,751	125,606	148,503	140,398	△5.5
(비 중)	(8.7)	(10.7)	(8.7)	(8.7)	(8.5)	(8.2)	
서남아 지역	8,224	5,879	5,521	16,851	38,926	50,619	30.0
(비 중)	(0.8)	(0.5)	(0.4)	(1.2)	(2.2)	(2.9)	
중 동	14,325	5,028	20,743	59,839	111,713	104,490	△6.5
(비 중)	(1.4)	(0.4)	(1.6)	(4.2)	(6.4)	(6.1)	
유 럽	33,808	17,521	14,742	66,385	170,972	211,263	23.6
(비 중)	(3.3)	(1.5)	(1.1)	(4.6)	(9.7)	(12.3)	
아프리카	3,029	1,957	964	8,851	23,543	25,751	9.4
(비 중)	(0.3)	(0.2)	(0.1)	(0.6)	(1.3)	(1.5)	
북 미 주	222,287	256,096	303,607	318,118	456,410	421,152	△7.7
(비 중)	(21.5)	(22.3)	(23.1)	(22.1)	(26.0)	(24.5)	
중 미	43,054	58,644	62,366	67,764	51,637	48,355	△6.4
(비 중)	(4.2)	(5.1)	(4.7)	(4.7)	(2.9)	(2.8)	
남 미	1,278	191	152	2,478	40,152	54,434	35.6
(비 중)	(0.1)	(0.0)	(0.0)	(0.2)	(2.3)	(3.2)	
대 양 주	1,428	1,737	2,672	4,965	10,031	9,125	△9.0
(비 중)	(0.2)	(0.2)	(0.2)	(0.3)	(0.6)	(0.5)	

※ 자료 : SP-IDC 참조(연안화물 제외)



03. 광양항 개발사업

개 발 방 향

-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만의 개발
  - 동북아 경제권의 관문항으로서 국제 환적항 기능 제고
- 여수·광양권역을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 및 국제물류비지니스 중심지 조성

사업개요

구 분	전체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1차	3단계2차	장 래
○사업기간	'87~2020	'87 ~ '99	'95~2004	'99~2007	2001~2011	~2020
○사업비 (억원)	73,244 -정부:37,730 -공단:39,514	5,202 -정부:2,289 -공단:2,913	11,903 -정부:7,127 -공단:4,776	60,139 -정부:28,314 -공단:3,770	-공단:7,357	-공단:20,698
○사업내용						
- 안벽	11.30㎞ (34선석)	1.4㎞ (4선석)	2.3㎞ (8선석)	1.4㎞ (4선석)	1.3㎞ (3선석)	4.9㎞ (14선석)
- 도로	33.7㎞	6㎞	12.9㎞	11.4㎞		3.4㎞
- 철도	9.6㎞	2.5㎞	-	7.1㎞		
- 항로준설	140백만㎥	14백만㎥	23백만㎥	130백만㎥		
- 투기장호안	61.4㎞	-	26.7㎞	34.7㎞		
○사업효과						
- 접안능력	5만톤급×29 2만톤급×5	5만톤급×4	5만톤급×4 2만톤급×4	5만톤급×4	5만톤급×3 2만톤급×1	5만톤급×14
- 하역능력	1,245만TEU	160만TEU	228만TEU	160만TEU	137만TEU	560만TEU

추진경위

- ‘85. 4. : 항만기본계획 고시
- ‘87. 12. : 1단계 공사 착수
- ‘96. 9. : 2단계 1차 공사 착수
- ‘97. 12. : 1단계 부두준공 (5만톤급 4선석)
- ‘98. 12. : 동측배후도로 철송장 개장
- ‘99. 2. : 2단계2차 공사착수
- ‘01. 12. : 2단계 1차 사업 준공 (5만톤급 2선석, 2만톤급 2선석)
- ‘02. 9. : 3단계 1차 공사착수
- ‘03. 7. : 3단계 2차 공사 착수
- ‘04. 12. : 2단계 2차 사업 준공 (5만톤급 2선석, 2만톤급 2선석)
- ‘06. 12. : 3단계 1차 사업 준공(5만톤급 4선석)







04. 광양항 3단계 2차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1 ~ 2017
- 사 업 비 : 7,357억원
- 사업내용
  - 안　　벽 : 1,940m
  - 접안능력 : 5만톤급 3선석, 2만톤급 1선석
  - 하역능력 : 1,370천TEU/년

※ 추진현황('09. 2월말 현재) : 91% 공정률

■ 추진경위
- '01. 12. : 실시설계용역 착수
- '02. 8. : 항만공사시행허가
- '03. 2. : 공사입찰공고(대안설계)
- '03. 7.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수
- '04. 6. : 상부공사 민자사업 공고
- '10. 10. : 하부공사 준공(예정)

광양항 3단계2차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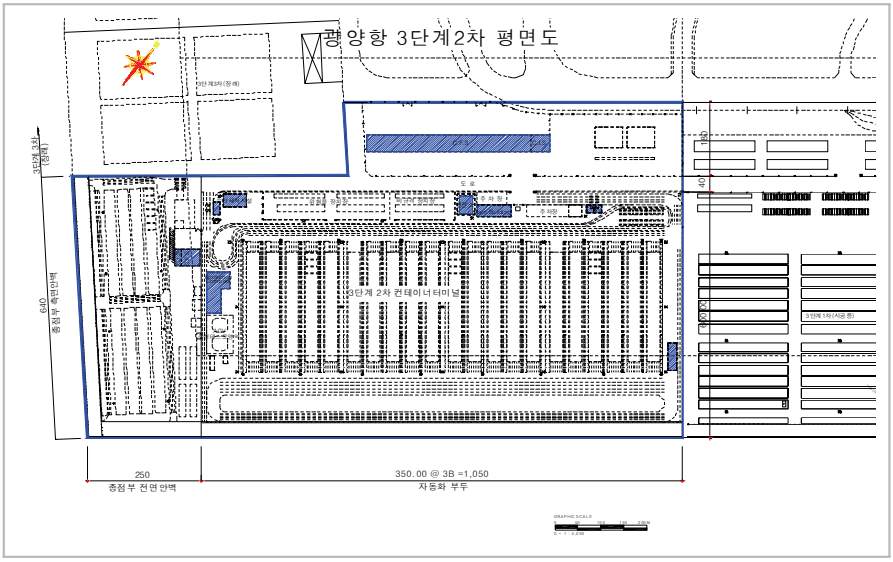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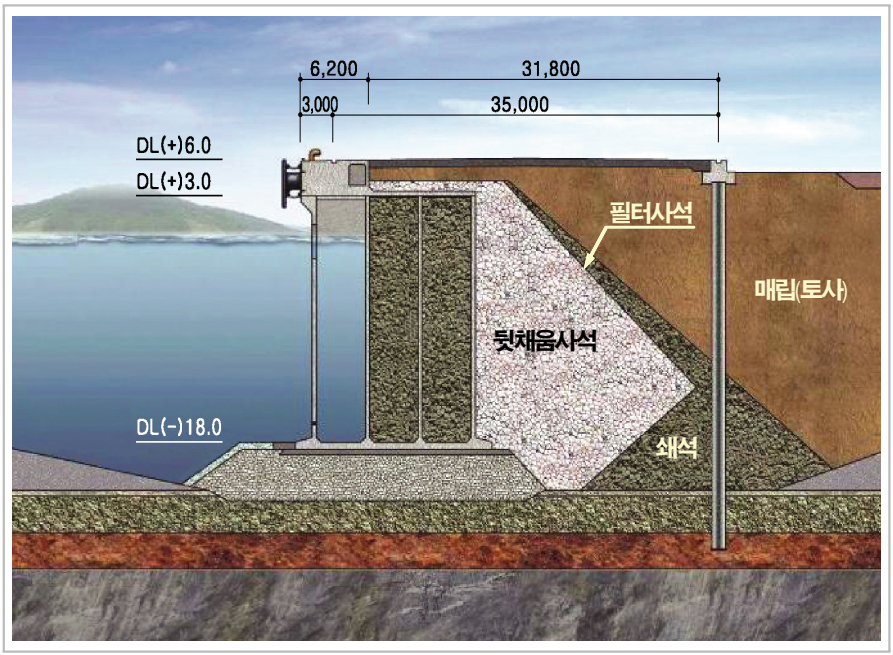



05. 광양항 업무지원시설 (월드마린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1단계)
- 사업기간 : 2002 ~ 2007
- 사 업 비 : 452억원
- 사업내용 : 업무지원시설 1동 및 부대시설
  - 대지면적 : 20,822.4㎡
  - 연 면 적 : 18,460.18㎡
  - 건물최고높이 : 93.2m (층수 : 19층)
  - 주차대수 : 210대
  - 주요사용재료 : 알루미늄 복합패널 + T24 칼라 복층로이유리

■ 2단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0 ~ 2012
- 사 업 비 : 327백만원
- 사업내용 : 지하1층/지상17층 연면적 17천㎡

■ 추진계획 : 수요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2010년)
공사시행(2011~2012)


월드마린센터
World Marine Center



06. 복합운송 지원창고

공사개요

- 사업기간 : 2005. 8. ~ 2005. 12.
- 공 사 비 : 19억원
- 구조/층수 : 철골조 + 샌드위치(우레탄)판넬/지상2층
- 면적개요

건축면적	연 면 적			조경면적
	합 계	1층	2층	
2,268㎡	2,172㎡	1,944㎡	228㎡	1,270㎡

※ 창고 1층 연면적 1,944㎡ 중 사무실 및 부대시설이 180㎡임

조감도



07. 냉동 · 냉장창고

공사개요(1층)

- 공사기간 : 2005. 10. ~ 2006. 7.
- 공 사 비 : 80억원
- 구조 및 층수 : 철골 ·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 면적개요

건축면적	연 면 적			주차대수
	합 계	냉동 · 냉장실	부대시설	
3,978㎡ (1,203평)	4,934 (1,492평)	2,479㎡ (750평)	2,455㎡ (742평)	옥외주차식 22대

- 냉동 · 냉장 SYSTEM : 암모니아 증발식, 중앙집중 액펌프식

냉동·냉장창고 증축시설(2층)

- 연 면 적 : 4,477.8㎡ (사무실 1개층 포함)
- 공사기간 : '09. 2. ~ 8.(예정)

※ 증축 중인 냉동·냉장창고의 면적 등 내용은 준공 시 확정 예정

조감도





08. 광양항 배후수송시설 현황

항만 인입도로 및 철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5 ~ 2010
- 사 업 비 : 6,658억원
- 사업내용
  - 도로 30.3㎞, 컨부두 연결교량 152m, 철도 9.6㎞

추진현황

- 도로건설

사 업 명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시행청	비 고
동측배후도로 (동광양IC ~ 컨부두)	6.0km	'93 ~ '98 【준공】	926	여수청	–
부두내도로1공구 (컨부두 1 ~ 2단계)	4.1km	'97 ~ '01 【준공】	368	여수청	–
컨부두연결교량 (컨부두 ~ 중마매립지)	152m	'05 ~ '08 【준공】	180	여수청	–
부두내도로2공구 (컨부두 2,3단계 ~ 초남)	4.15km	'03 ~ '09	699	"	–
서측 배후도로 (컨부두~인동IC)	11.4km	'02 ~ '10	1,880	"	컨부두~세풍JCT간 8.1km '07년 추진
컨부두연결도로 (컨부두 ~ 금호대교)	4.5km	'01 ~ '08	427 (214)	광양시 ( )국비	'08년말 88% 추진

- 철도건설

사 업 명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시행청
동측인입철도 (황길신호장 ~ 컨부두)	2.5km	'93~'99 【준공】	563	여수청
서측인입철도 (초남역 ~ 컨부두)	7.1km	'05~'10	1,615	"

광역도로 및 철도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시 행 청
도로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L=117.8㎞, 4차로	'04 ~ '10	20,796	한국도로공사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L=106.8㎞, 4차로	'02 ~ '11	20,074	〃
	여수~순천간 국도17호선	L=17.2㎞, 4차로	'05 ~ '11	2,067	익산국토 관리청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L=8.5㎞, 4~6차로	'05 ~ '11	8,800	전라남도
철도	전라선 복선전철	L=185.8㎞, 복선전철	'02 ~ '11	16,990	철도시설공단
	동순천~광양간 경전선개량	L=10.9㎞, 복선화 (전라선1.7㎞,경전선9.2㎞)	'01 ~ '10	3,5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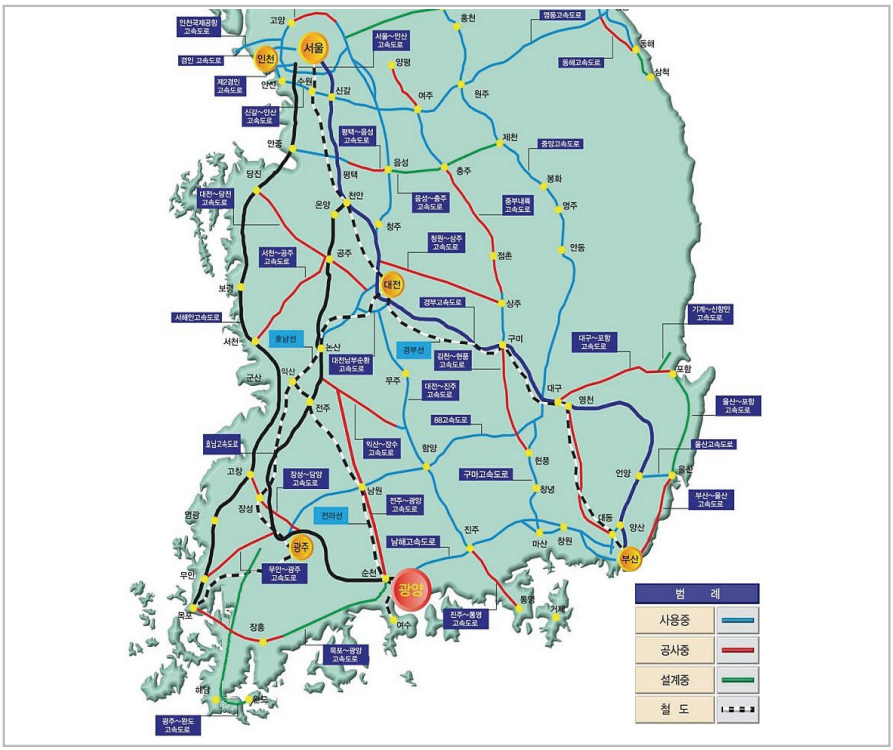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투자정보

Q&A

Ⅰ. 입주관련 사항

1. 항만 배후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의 개념 및 입주 가능 업종은 ? p.37

2. 배후물류단지 입주 가능업체 선정기준은 ? p.39

3. 배후물류단지 및 황금물류센터 임대료 수준은 ? p.39

4.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절차는 ? p.41

Gwangyang Port
Free Trade Zone Guidebook

Q1. 항만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의 개념 및 입주 가능 업종은 ?

■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이 자유롭게 제조 · 물류 ·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정지역을 말하며, 입주기업에게 무관세,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 광양항 배후물류단지는 항만 자유무역지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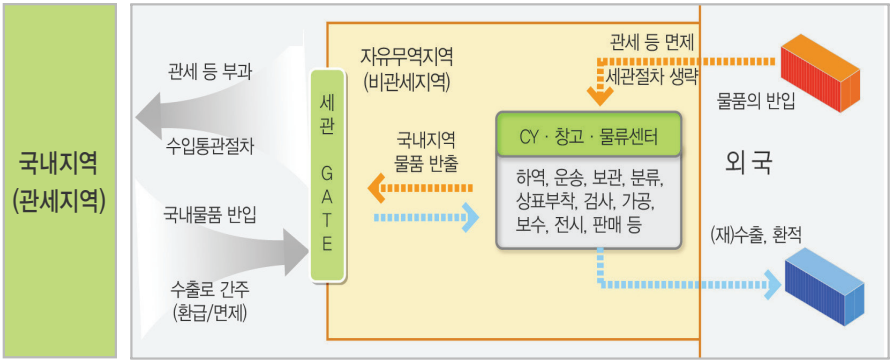

■ 입주 가능 업종 (※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주자격)

- 항만 자유무역지역에는 물품 하역업·운송업·보관업·전시업·복합물류관련사업 (포장·보수·가공·조립업)·국제물류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의 수출입거래물량이 해당기간의 총거래물량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제조업(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의 수출액이 해당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인 경우)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 100의 1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을 말하며, 외국인투자가 외국인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단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5천만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을 의미

- 10%미만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경우라도 ⅰ)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ⅱ)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ⅲ) 기술의 제공 · 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Q2. 배후물류단지 입주 가능업체 선정기준은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취지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과 물류기업을 선호하지만 광양항의 경우 총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제조업도 입주 가능합니다.
- 입주업체 선정은 제안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평가 및 선정의 객관성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합니다.
- 평가기준은 사업능력, 사업 및 운영계획,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건설계획을 평가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공단 또는 국토해양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사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ca.or.kr) 입찰정보란에서 '공고내용' 확인 가능

Q3. 배후물류단지 및 황금물류센터 임대료 수준은 ?

최저임대료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드립니다.

-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현황

  - 배후물류단지

구 분	임대료	비 고
기본임대료	200원/월 · ㎡	
우대임대료	30원/월 · ㎡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

  - 황금물류센터

구 분	임대료	비 고
임대료	510원/㎡ · 월	

※ 입주업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통제시설 유지관리비는 공단이 부담



국내 타항만 자유무역지역 비교

구 분	기본임대료	우대임대료
부산항 배후단지	300원/월 · ㎡	150원/월 · ㎡
부산신항 배후단지	260원/월 · ㎡	40원/월 · ㎡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750원/월 · ㎡	500원/월 · ㎡
인천공항 물류단지	2,013원/월 · ㎡	1,006원/월 · ㎡

국내 산업단지 비교

구 분	가 격	비 고
장호원일반산업단지	70,000원/㎡	분양가(경기도 이천)
구미국가산업단지	148,230원/㎡	분양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164,851원/㎡	분양가
동해 북평산업단지	82,510원/㎡	분양가

※ '09. 3. 현재 분양중인 산업단지 기준

광양인근 산업단지 비교

구 분	가 격	비 고
연관국가산업단지	12,000원/㎡	분양가
초남일반산업단지	78,000원/㎡	분양가
여수국가산업단지	147,000원/㎡	분양가

국내 물류센터

구 분	가 격	비 고
광양항 황금물류센터	510원/㎡ · 월	임대가
부산항 공동물류센터	641원/㎡ · 월	임대가

Q4.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절차는 ?

입주절차	기 한	관련기관
공 고	공단 홈페이지 및 신문 등 언론 게재 (www.kca.or.kr)	공 단
입주기업 선정	외부평가 방식으로 입주기업선정	공 단 ※ 공단 홈페이지 게재
신청 자격업종 증빙서류 제출	입주선정기업은 입주선정일로부터 입주허가 이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공 단
입주허가	지정기일 이내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임대차계약	입주허가일로부터 90일이내	공 단 ※ 자유무역법 제13조
건축허가	입주허가일로부터 180일이내	여수지방해양항만청 ※ 자유무역법 제13조





Ⅱ. 시설물 설치관련 사항

1. 입주기업의 공사시행 범위는 ? p.43

2. 배후물류단지 내 공급시설 설치 계획은 ? p.43

3. 배후물류단지 건축물 축조관련 규정은 ? p.43

4. 배후물류단지 지반개량 강도는 ? p.44

5. 배후물류단지 연약지반 심도 및 기초공사와 창고건립 공사비용은 ? p.44

Gwangyang Port
Free Trade Zone Guidebook

Q1. 입주기업의 공사시행 범위는 ?

■ 임대단지는 지반개량 및 단지내 도로, 공급시설(전기, 통신, 상하수도) 관로가 시공된 상태로 임대되며 입주 후 임대부지내 포장, 창고 등 건축물축조, 건물부터 공급시설 주관로까지의 연결은 입주자 부담으로 시공하게 됩니다.

Q2. 배후물류단지 내 상·하수도등 공급시설 설치 계획은 ?

시설명	시 설 현 황
상수도	· 동측 배후물류단지 예상소요량 3,406㎥/일을 공급하기 위해 인근저수지(V=10,000㎥)에서 전용관로(D600mm) 부설 계획
하수도	·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차집관거(D1000mm)에 연결하여 광양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하시켜 처리
전 기	· 100kw 미만의 수용자는 22.9kw 배전선로에 연결된 한전의 변압기에서 3상4선 380/220V로 강압하여 3상4선 380/220V 혹은 단상 220V로 공급 · 100kw 이상의 수용자는 배전선로에서 22.9kv 수용자 변전소에 직접 공급하여 전압을 강압하여 사용
통 신	· 광양 KT에서 배후단지내로 인입 · 광케이블, 1,800회선
가스, 지역난방	· '컨'부두후면 150m 도로를 통과하는 관로에서 연결가능
교통망	· 도로 : 배후도로–남해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 배후도로–남해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 철도 : 광양항 항만인입철도–경전선–전라선 · 부두 : 5만톤급12선석, 2만톤급4선석(현재 완공 기준)

Q3. 배후물류단지 건축물 축조관련 규정은 ?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건폐율이라 하며, 광양항 물류단지의 건폐율은 동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100분의 70이하」를 적용합니다.

※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 : 100분의 70이하(산업단지 100분의 80이하)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용적율이라 하며, 광양항 물류단지의 경우 일반공업지역이므로 용적율은 350%이하를 적용합니다.

※ 전용공업지역 300%이하, 준공업지역 400%이하



Q4. 배후물류단지 지반개량 강도는 ?

- 단지 조성시 지반개량은 도로 및 단지 : 1.5t/㎡, 공원 · 녹지 0.5t/㎡의 사용하중으로 설계됩니다.
  ※ 단지내 건축 등 시설물 축조시는 별도의 기초보강 공사가 필요

Q5. 배후물류단지 연약지반 심도 및 기초공사와 창고건립 공사비용은 ?

-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의 연약지반 심도는 약 10~16m 정도입니다.

- 기초공법의 경우 공법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존 1단계 입주업체의 기초설계 자료를 참조할 경우 SIP(Soil-cement Injected Pile Methods) 공법 적용시 3만원/m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 창고면적 기준 2,000평 시공시 약 300~500개의 파일이 필요함을 전제할 때 평당 기초공사 시공비는 약 8~12만원정도 예상됩니다.

- 창고건립 공사비

(단위 : 만원)

건설 종류	평당 가격	비 고
철골 (조립식, Hi-beam)	약 120~150	◦ 물류창고로 가장 널리 활용 ◦ 장기적으로 건물 이용시 적합
철콘	약 200	◦ 일반주거용 ◦ 물류창고로는 부적합
샌드위치판넬	약 30~40	◦ 일반창고로는 가능 ◦ 견고성 현저히 떨어짐

Ⅲ.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

1. 외국인투자의 유형은 ? **p.46**

2.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절차는 ? **p.47**

3. 외국투자가의 대한민국 법인 설립절차는 ? **p.49**

4. 외국인투자 관련 사무 처리기간은 ? **p.50**

5. 대한민국 기업을 M&A할 때 요구되는 신고절차 및 자산인수 또는 사업양수 방법은 ? **p.51**

6.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입국할 경우 필요한 사증은 ? **p.51**

7.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혜택은 ? **p.51**

8.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혜택은 ? **p.54**

9.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조세지원 혜택은 ? **p.55**

10. 자유무역지역 내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기정책은 ? **p.56**

11. 한국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은 ? **p.59**

12. 광양만권의 전력 및 용수 공급시설 현황은 ? **p.60**

13.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생활여건 지원사항은 ? **p.61**

14. 외국기업의 한국지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인지 ? **p.63**

15. 외국인투자기업과 대한민국 기업이 받는 혜택의 차이점은 ? **p.64**

16.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 구분은 ? **p.64**

17. 조세감면기간 중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변동은 ? **p.65**

18. 자유무역지역과 일반지역의 근로자 고용기준상 차이점은 ? **p.65**

19.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지원제도는 ? **p.66**

20. 근로자들의 주된 요구사항과 해결방식은 ? **p.66**

21.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대책은 ? **p.66**

Gwangyang Port
Free Trade Zone Guidebook



Q1. 외국인투자의 유형은 ?

■ 외국인투자는 ①신주 등1)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②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③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④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등 4가지로 분류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8조)

①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설기업의 설립(단독 혹은 합작) 또는 대한민국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

②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대한민국 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

③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신주(果實)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1)]
-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등을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④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여하는 것

1) 신주등 : 주식 또는 지분

Q2.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절차는 ?

■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환은행, kotra)

↓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

법인설립등기
(법인등기소)

↓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기관)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 크게 4단계 (우측 참조)로 이루어지며, 외국인은 '외국 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2개단계만 추가될뿐 나머지는 기본적 으로 동일함 단,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는 불필요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투자가(또는 대리인)는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 기타 지정된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tra(kotra) 또는 코트라 국내외 무역관에서 외국인 투자 신고 가능 (신고 처리기간 : 즉시)

사전신고 및 사후신고

외국인 투자신고에는 그 유형에 따라 주식 등 취득 전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와 주식취득 후 또는 계약 체결 후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로 나뉨

구분	신 고 항 목	비 고
사전신고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장기차고나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사후신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으로 취득 •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금)의 출자 • 매입, 상속, 유증, 증여로 취득 •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식 등의 양도 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식 등의 감소 신고	상법 제439조 규정의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 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할 경우 ☞ 관세청 검토확인 신청 필요

Q3.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한민국 법인 설립절차는 ?

■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상법을 적용받으며, ①발기인 1인 이상, ②자본금 5천만원 이상, ③최소한의 임원(자본금 5억원 미만 : 이사 1, 감사 1인, 5억원 이상 : 이사 3, 감사 1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절차(유형별 주식회사 설립절차 경우)는?

발기설립	모집설립
발기인의 구성	발기인의 구성
발기인총회 및 의사록 작성	발기인총회 및 의사록 작성
정관의 작성과 공증	정관의 작성과 공증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의 주식인수, 주주의 모집 · 배정
현금(현물포함) 출자의 이행	현금(현물포함) 출자의 이행
이사 및 감사의 설립경과조사보고 (발기인에게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설립경과조사 및 보고)	창립총회에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보고
–	창립총회의 개최(이사 및 감사의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
이사회의 개최 및 대표이사의 선임	이사회의 개최 및 대표이사의 선임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동시에 이루어짐.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KOTRA 내의 Invest KOREA에 신청
-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끝마쳐야 함.

Q4. 외국인투자 관련 사무 처리기간은 ?

■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4조)

사무의 종류	근 거 법 령	처리기간
현물출자완료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즉 시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체류자격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기간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제30조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5조	7일
공장설립 등 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	7일, 14일, 30일
건축허가	건축법 제8조	7일, 14일, 30일
건축물사용승인	건축법 제18조	6일, 14일
폐수배출시설허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7일
항만공사시행허가 등 기타 사무		해당법령상의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7일, 14일, 30일 등 여러 가지인 것은 사무내용에 따라 그 처리기간이 다르기 때문임.
건축허가를 예를 들면,
-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 : 7일
- 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 30일
- 기타의 건축물 : 14일

Q5. 대한민국 기업을 M&A할 때 요구되는 신고절차 및 자산인수 또는 사업양수 방법

■ 대한민국 기업을 M&A할 때 외국인직접투자의 신고절차를 밟아 외국환은행 본·지점, KOTRA에 신고하고 신고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면 됩니다.

- 즉, 대한민국내에 기업을 설립하고, 그 기업이 대상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 결과적으로 외국투자가는 신규 현지기업의 신주를 인수하여 투자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로 처리

Q6.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입국할 경우 필요한 사증

■ 기업투자 사증(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에게 발급됨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는 D-8사증 제외)

-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입국할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단기상용 사증(C-2)을 발급받아 입국

Q7.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혜택은?

■ 감면대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중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가 미화 1천만불이상, 물류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가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 ⑩항

감 면 률

조세종류		감면기간 및 감면률	관련법규
국세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그다음2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15년간 100%	전라남도세 감면조례 제 28도
	재산세	10년간 100%, 그다음5년 50%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 27조

※ 다만, 국내 기업의 경우 재산세 5년간 50% 감면(광양시 조례 제 25조)

기 타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 그다음 2년은 감면대상의 50% 감면
-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감소 할 때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 비교표

<table>
<tr><th>세법</th><th colspan="6">감면요건</th><th>감면기간</th></tr>
<tr><td rowspan="11">조세특례제한법</td><td colspan="6">1.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고장시설 등 설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R&D업은 비 고도 기수수반사업도 감면 가능)
☞ 고도기술수반사업 (3년이내 또는 3년 경과시는 기술적 성능 등이 뛰어난 기술 또는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감면</td><td>◦ 국세(7년)
-5년 : 100%
-2년 : 50%
◦ 취·등록세
-15년 : 100%
◦ 재산세
-10년 : 100%
- 5년 : 50%</td></tr>
<tr><td colspan="7">2. 외국인투자지역(FIZ)기업(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구 분</td><td>외투금액</td><td>고용규모등</td><td>감면기간</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① 제조업</td><td>3천만불이상</td><td rowspan="5"></td><td rowspan="5">◦ 국세(7년)
-5년 : 100%
-2년 : 50%
◦ 취·등록세
-15년 : 100%
◦ 재산세
-10년 : 100%
- 5년 : 50%</td></tr>
<tr><td colspan="2"></td><td rowspan="3">②</td><td>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td><td rowspan="3">2천만불이상</td></tr>
<tr><td colspan="2"></td><td>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td></tr>
<tr><td colspan="2"></td><td>국제회의시설</td></tr>
<tr><td colspan="2"></td><td rowspan="2"></td><td>물류(유통)산업(복합화물터미널 사업공동집배송센터, 항만・공항 시설운영 사업)</td><td rowspan="2">1천만불이상</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td><td>사회간접자본시설(민투법)</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③ R&D업</td><td>5백만불이상</td><td>석사10인이상</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④ 2인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td><td>3천만불이상</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3.자유무역지역
(구, 관세자유역지역포함)
4.외투기업전용단지입주 기업
('05년 신설)</td><td colspan="2">제조업</td><td colspan="2">1천만불이상</td><td></td><td rowspan="2">◦ 국세(5년)
-3년 : 100%
-2년 : 50%
◦ 취·등록세
-15년 : 100%
◦ 재산세
-10년 : 100%
- 5년 : 50%</td></tr>
<tr><td colspan="2">물류업</td><td colspan="2">5백만불이상</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8">5.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의료기관만 해당)
6.기업도시 입주기업</td><td colspan="2">제조업</td><td colspan="2">1천만불이상</td><td></td></tr>
<tr><td colspan="2">관광업</td><td colspan="2">1천만불이상</td><td></td></tr>
<tr><td colspan="2">물류업</td><td colspan="2">5백만불이상</td><td>사회간접자본업포함</td></tr>
<tr><td colspan="2">의료기관</td><td colspan="2">5백만불이상</td><td></td></tr>
<tr><td colspan="2">문화사업</td><td colspan="2">1천만불이상</td><td></td></tr>
<tr><td colspan="2">기타</td><td colspan="2">1천만불이상</td><td>엔지니어링,부가통신등</td></tr>
<tr><td colspan="2">R&D업</td><td colspan="2">5백만불이상</td><td></td></tr>
<tr><td colspan="2">7.경제자유구역개발자
8.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td><td colspan="2">개발사업 시행자</td><td colspan="3">3천만불이상 또는50/100이고 총 개발사업비가 1억불 이상</td></tr>
<tr><td colspan="2">9.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자</td><td colspan="2">개발사업 시행자</td><td colspan="3">1천만불이상 또는 50/100이고 총개발사업비가 1억불 이상</td><td rowspan="4">◦ 국세(5년)
-3년 : 100%
-2년 : 50%
◦ 지방세
-15년 : 100%</td></tr>
<tr><td rowspan="3">10.</td><td>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td><td colspan="4">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업,문화산업,첨단기술산업</td></tr>
<tr><td>제주투자진흥지구</td><td colspan="3">관광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시설업, 대체에너지사업</td><td>1천만불이상</td></tr>
<tr><td rowspan="2">제주자유무역지구입주기업</td><td>제조업</td><td>1천만불이상</td><td>상시고용원100명</td></tr>
<tr><td>물류업</td><td>5백만불이상</td><td></td></tr>
</table>



Q8.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혜택은 ?

■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혜택은

- 첫째, 50년의 범위이내에서 협상을 통해 사용기간 결정이 가능하고, 대한민국 기업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물류부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자유무역지역법 제17조)
  ※ 광양항의 ㎡당 연간 임대료 : 360원 (천평 임대시 연간 1,188,000원)
- 둘째, 모든 기업에게 관세·부가가치세·교통세·주세 등을 면제합니다.(자유무역지역법 제45조)
- 셋째, 5백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물류기업, 1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제조기업에게는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는 15년간 100%, 재산세는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를 감면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넷째,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투자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
  ※ 사전에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투자에 관한 MOU를 체결할 경우에도 입주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배당금 및 매각대금은 송금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되며,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

Q9.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조세지원 혜택은 ?

■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신고내용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도입하는 아래의 자본재는 면제신청에 의해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를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는 일반적으로 투자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재를 도입,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도입할 수 없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3년의 범위내에서 도입완료 기간을 연장 가능
- 이 경우 자본재 도입 완료시점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재의 수입신고를 완료 한 시점으로 봄

자본재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물·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물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Q10. 자유무역지역 내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기정책은 ?

■ 원산지표시는 수출입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정확한 정보(유명브랜드의 제3국 생산제품, OEM제품 등)를 제공하여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따라서 위반시 덤핑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쿼터제도 등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수반하는 규제성 제도이며
- 국가간 교역에 관한 합의 수준에 따라 쌍방의 관련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하는 쌍무규정에 해당합니다.

※ 한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Made in Korea"로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미국의 Rules of Origin에 맞지 않다면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원산지 제도를 '대외무역법'에 도입 · 운영 중이며 관련법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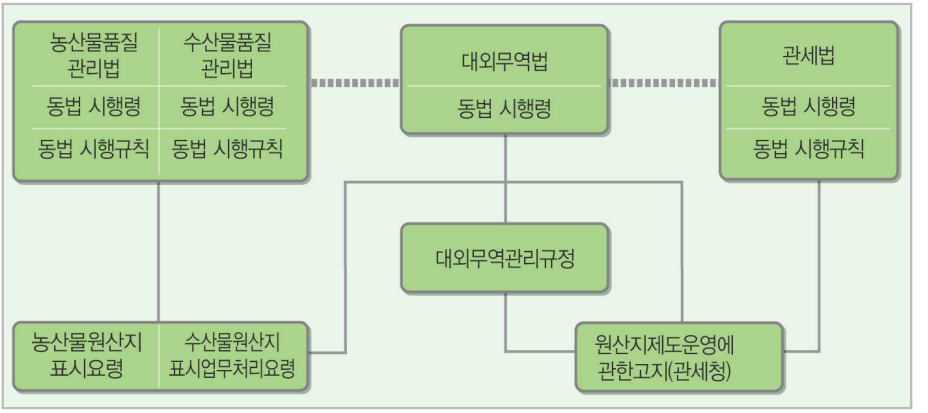

■ 완전생산품(농·수산물)외 2개국 이상에서 제조공정이 발생한 상품의 경우에 상품의 원산지를 어느 국가로 할 것인지 결정 필요

- 항만 자유무역지역은 단순 물류업종이 아닌 보수·가공·조립을 하는 복합물류관련업종이 입주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 기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①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완전생산물품"
② 생산 · 제조 · 가공 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③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1항)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3항)

- "실질적 변형"의 판단기준은 ① 세번(HS code) 변경기준 ② 부가가치기준 ③ 가공공정기준 세가지 임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 세번이 바뀐 경우 총 제조원가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 세번이 바뀌지 않은 경우 총 제조원가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2항)

■ "Made in Korea" 원산지 판정 방안

- 규정에 따르면 제조원가의 51%~85% 이상을 국내에서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는 제조·가공의 주요 공정을 한국으로 이전치 않으면 충족시키기 곤란한 조건
- 이 경우 원가상승으로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 등 획기적 원가절감 방안 마련 필요



자유무역지역내 가공후 제 3국 수출시

- 외국원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가공하여 제 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준용

※ 미 국 : 외국 창고, 무역지역지역등에서 제조가 아닌 가공 과정을 거친 경우 원래 제조국을 원산지로 표시
일 본 :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선별, 단순혼합 제외)을 가져오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

원산시 발급 절차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통관포탈 〉〉 수출통관 선택



Q11. 한국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은 ?

■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 우리나라는 '05. 5. 31.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를 시행
- 3D 업종 등 국내에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동시에 충족하고자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고용을 허용

※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를 설치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 업종 및 송출국가를 결정 고시

※ 고용허가제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적정규모 이하의 기업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협정을 체결한 국가(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의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도록 한 제도(중국은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 진행 중)

● 제조업·서비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내국인피보험자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조업	10인이하	5인이하	151인이상 200인이하	25인 이하
	11인이상 50인이하	10인이하	201인이상 300인이하	30인 이하
	51인이상 100인이하	15인이하	301인이상 500인이하	40인 이하
	101인이상 150인이하	20인이하	501인이상	50인 이하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5인이하	2인이하	16인이상 20인이하	7인이하
	6인이상 10인이하	3인이하	21인이상	10인이하
	11인이상 15인이하	5인이하		



Q12. 광양만권의 전력 및 용수 공급시설 현황은 ?

■ 광양만권은 인근에 광양제철, 율촌산단, 여천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전기 및 수도 공급이 충분합니다.

수 도 요 금

구 분	단 가	비 고
1톤 – 150톤	430원/톤	누진세율적용
150톤 이상	540원/톤	누진세율적용

※ 공장 또는 창고시설 기준시 1000평 300톤 사용시 : 162,000원/월

전 기 요 금

('08. 11. 13. 시행)

기본료(kw/h)	단 가(kw/h)		
	하절기(7-8월)	봄, 가을기 (3~6월, 9~10월)	동절기(11~2월)
4,190원	64.4원	48.5원	54.6원

※ 공장용 저전압(380volt 이하) 기준
※ 전력 공급은 충분
※ 한달에 50,000kw 사용시 : 2,425,000원/월(봄, 가을기)

Q13.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생활여건 지원사항은 ?

■ 광양항 물류단지는 자유무역지역인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지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불편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전용 병원 · 약국,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 운영할 수 있고
- 각종 문서를 외국어로 발간 · 접수 · 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받으며
-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대한 대가를 외국통화 ·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경상거래 : ① 사무소의 편리를 위해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 또는 영수
②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이와 직접 부대되는 운임 · 보험료 기타비용의 지급 또는 영수
③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부대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영수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차이

- 두 지역 모두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 자유무역지역은 물류업 · 제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 및 임대료 감면은 물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및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위한 산업특구 지역
- 경제자유지역은 물류 · 제조업 · 서비스업 등 산업기능과 주거 · 교육 · 의료 등 도시기능을 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조세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외국인이 불편함이 없이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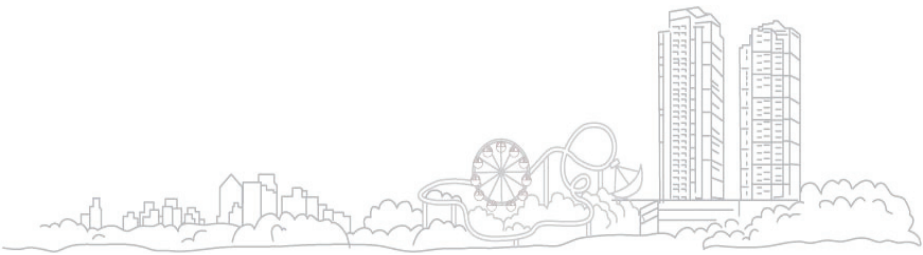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비교

구 분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근 거 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약칭 : 자유무역지역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약칭 : 경제자유구역법)
지정목적	–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관리권자	– 산업단지 : 지식경제부 – 항만 및 배후지 : 국토해양부 – 공항 및 배후지 : 국토해양부	– 시·도 경제자유구역청
입주업종	– 물류업, 제조업 등	– 물류업, 제조업, 외국인 학교, 외국인전용 병원 등
관세 등	– 무관세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제한적 관세면제(3년, 자본재) – 부가가치세 납부
국공유지등 임대	– 기본요율 : 저렴한 고시요율 – 임대기간 : 최대 50년	– 기본요율 : 재산가액×10/1000 – 임대기간 : 최대 50년
기 타	– 고령자, 장애인 등 고용의무 배제	– 고령자, 장애인 등 고용의무 배제 – 무급휴일, 무급생리휴가 부여 – 월차유급휴가 배제 – 외국인전용 병원 개설 등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Q14. 외국기업의 한국지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인지 ?

■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사무소)는 모기업의 자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닙니다.

- 그러나 동 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만큼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률에 설립한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기업으로 인정됨

- 대한민국 법률의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투자를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을 '외국투자가'
-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비교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근 거 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
동 일 체	외국투자가와 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회계 · 결산 독립)	본점과 지사가 동일인격체 (회계 · 결산 동일체)
신고 · 허가기관	KOTRA 국내외 무역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환은행 본 · 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재정경제부(금융, 보험, 증권의 허가 · 신고)
투자금액	건당 5천만원 이상	금액제한 없음
투 자 자 보 호	투자과실 · 주식매각대금 송금보장,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등	보장규정 없음
조세감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등에 한해 국세, 지방세 등 감면	별도의 감면혜택 없음



Q15. 외국기인투자기업과 대한민국 기업이 받는 혜택의 차이점 ?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대한민국 기업도 저렴한 임대료 혜택은 물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유무역지역에 우선해서 입주할 수 있으며, 법인세 등 조세감면, 대한민국 기업보다 훨씬 싼 임대료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외국기업이 대한민국 기업과 합작하고, 그 외국기업이 합작기업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게 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기업도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양항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외국기업과 대한민국 기업이 합작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한민국 기업 또는 외국기업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보다 높은 가점을 부여합니다.
  - 대한민국 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높은 가점을 부여하는 이유는 외국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 기업을 외국기업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

Q16.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 구분은 ?

-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대상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대상사업은 구분하여 경리(법인세법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공통이익금과 공통손금은 각각 안분계산합니다.

- 공통이익금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대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 공통손금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대상사업이 동일업종인 경우에는 각각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동일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Q17. 조세감면기간 중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변동은 ?

■ 조세감면기간 중 다른 외국인 또는 다른 외국기업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 합니다.

■ 그러나, 기존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지분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 총액에 변동이 있으므로 양도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 또한,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이므로 추징대상에 해당

Q18. 자유무역지역과 일반지역의 근로자 고용기준상 차이점은 ?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반지역의 기업들이 적용받는 고령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고용의무를 받지 아니 합니다.(자유무역지역법 제3조)

■ 또한, 일반지역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는 대신 무급휴일,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으며, 또한, 근로자에게 1월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배제됩니다.(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Q19.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지원제도는 ?

-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 산하 각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을 전담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동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메뉴얼'을 비롯하여 노사관계 성공사례, 노무관련 신설 제도, 현안사항 등 각종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계 참고자료를 제작하여 국내외 공관, 외국인 경영자단체, 지방노동관서,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노무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Q20. 근로자들의 주된 요구사항과 해결방식은 ?

- 1998년 이전에는 주로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항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고용보장이 노사간 주요쟁점 사항입니다.

-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항은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으로 해결하도록 정부는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교섭을 보장하고, 교섭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견이 지속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정한 조정서비스를 통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Q21.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대책은 ?

- 2004년 4월 7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항만물류협회 및 국토해양부는 안정적인 항만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정 항만평화 선언식」을 갖고, 항만산업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5개 항목을 전격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① 최고의 항만 서비스 제공 ② 노동의 질 향상 ③ 모범적 노사관계를 통한 항만산업의 평화정착 ④ 항만현대화 추진협력 ⑤ 하역요금 인상율(4.5%)에 준해 2004년 5월까지 임금협정 체결



Ⅳ. 기타 사항

1.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비 납부 방법은 ? **p.68**

2. 단체기숙사 축조 가능여부 및 제공여부 ? **p.68**

3. 광양만권의 노동력 수급현황은 ? **p.69**

4. 임대부지 및 건물의 재임대 가능여부 ? **p.69**

5. 입주자시설의 양도 및 임대 가능여부 ? **p.69**

6. 광양만권의 제조업 관련 전반적인 현황은 ? **p.70**

7. 광양항의 선박 기항현황은 ? **p.70**

8.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내 제조를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내국물품 반입이 가능한지 ? **p.71**

9.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내 창고에 수입물품 및 내수판매용 내국물품이 동시에 보관가능한가 ? **p.71**

10. 광양항 일반부두 현황은 ? **p.72**

11. 기타 사항 **p.74**

Gwangyang Port
Free Trade Zone Guidebook



Q1.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비 납부 방법은 ?

■ 공동시설의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에서 책정하는 산식에 따라 분담액을 정한 후 분기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 공동시설이란,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내에 관리권자가 설치한 도로 가로등, 녹지, 체육시설, 기숙사 등을 의미하며,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는 이러한 시설을 유지보수·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 입주업체 ☞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 공 단 ☞ 공단은 입주업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통제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부담

Q2. 단체기숙사 축조 가능여부 및 제공여부 ?

■ 관련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내 개별기업의 기숙사 축조는 불가능하나 추후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경우 공동시설로 축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3. 광양만권의 노동력 수급현황은 ?

■ 노동력 수준 및 임금현황

● 현재 광양시의 인구는 14만여명 수준('08. 3월 조사자료)이며 노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여수, 순천 등 인근지역을 포함한 광양만권의 경우 약 100만여명의 인구를 보유 (경제활동인구 70만여명)
- 인근의 전남부 지역의 광주, 순천, 여수 등지의 각 대학에서 매년 졸업생 4만여명이 배출
- 직업훈련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매년 2만여명의 노동력이 유입

● 노동부 고시('08. 7. 3.)에서 규정하는 '09년도('09.1.1.~12.31.)최저 임금은 4,000원/시간, 32,000원/일
- 광양지역 현장 관리자의 대략적인 임금은 1,600,000원/월 정도 (고졸기준/ 광양만권 지방산단 입주기업 2008년 임금수준)
- 근로자의 임금은 약 1,00,000원/월(35세 여성, 월 25일, 일 8시간 근무 기준시)정도

※ 휴일, 시간외 등 초과근무와 복리후생비 등 감안시 인건비 상승

Q4. 임대부지 및 건물의 재임대 가능여부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5조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음"에 의거 입주자가 설치 · 취득하게 되는 공장등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입주자격이 있는 기업에 임대가능하나 광양항 배후물류단지내 토지는 취득한 토지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재임대는 불가능합니다.

Q5. 입주자시설의 양도 및 임대 가능여부 ?

■ 입주자 시설 건립 완료 후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단과 협의를 거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Q6. 광양만권의 제조업 관련 전반적인 현황은 ?

■ 제조업 관련 현황

● 광양항 주변에는 제조업 관련 산업단지가 있으며 이미 가동중인 POSCO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 광양 연관 산업 단지
  - 면　　적 : 1,730천㎡
  - 가동업체 : 60개사(4,153명)
  - 주요업종 : 비금속 조립 금속, 1차금속, 기계제조 등
- 초남산업단지
  - 면　　적 : 409천㎡
  - 가동업체 : 30개사(673명)
  - 주요업종 : 조립금속, 1차 금속, 재생가공, 화합물.
- 광양국가산업단지
  - 위　　치 : 광양시 태인동, 금호동 일원
  - 면　　적 : 96,405천㎡
  - 가동업체 : 66개사(10,399명)
  - 투자업종 : 제철 및 관련산업 등
- 여수국가산업단지
  - 위　　치 : 여수시 중흥동, 삼일동 일원
  - 면　　적 : 31,711천㎡
  - 가동업체 : 182개사(13,621명)
  - 투자업종 : 석유화학, 기계, 비금속 등

Q7. 광양항의 선박 기항현황은 ?

■ 광양항의 정기 항차수는 주73항차로서 지속적으로 선박 기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동북아 32항차, 동남아 18항차, 북미 7항차, 중남미 2항차, 유럽 5항차, 중동 4항차, 연안 5항차

※ 선박 기항은 선대 및 항로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근 광양항 선박기항 및 항로 스케줄에 대한 자료는 http://www.portgy.com 〈세계선박운항스케줄〉 참조

Q8.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내 제조를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내국물품 반입이 가능한가 ?

(제조 후 일부는 국내에 다시 반출, 일부는 해외로 수출예정)

-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내 제조를 위한 자재 및 부품의 반입은 가능하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제5조(입주자격)에 의거, 배후물류단지 내에서 이루어진 제조의 경우 매출액의 50%이상을 수출하여야 함.(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 제3-7조, 제5조1호, 2호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5-1-1조)

- 내국물품(원자재 및 부품) 반입절차는 ① 내국작업허가신청 및 허가 ⇒ ② 내국물품의원재료사용승인신청서 제출 ⇒ ③ 내국작업 종료 ⇒ ④ 내국작업 종료신고 및 반출신고

  ※ 내국작업 후 수출 시에는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 제3-6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Q9.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수입물품 및 내수판매용 내국물품이 동시에 보관가능한가?

- 수입물품과 내국물품 동시에 보관 가능하며, 내국물품 반입 시에는 내국물품반입확인(신청)서(별지제4호)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9조)

-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내국물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183조 및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3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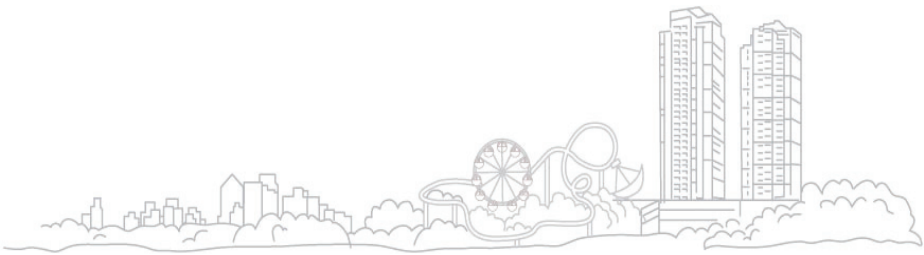

Q10. 광양항 일반부두 현황은 ?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안벽 420m(호안 533m)
- 총사업비 : 54,416백만원(감리비 포함)
- 도 급 액 : 51,797백만원
- 사업기간 : '03. 11. ~ '08. 11.
- 시 공 사 : (주)보성건설 외 2개사(한라건설, 삼협건설)
- 감 리 사 : (주)세일종합기술공사 외 1개사
- 시 행 처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 조감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연결교량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교량 152m × 폭 50m
- 총사업비 : 18,555백만원(감리비 포함)
- 도 급 액 : 17,416백만원
- 사업기간 : '06. 04. ~ '08. 07.
- 시 공 사 : 명신건설(주) 외 2개사(동원시스템즈, 영무토건)
- 감 리 사 : (주)한국종합기술 외 1개사
- 시 행 처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 조감도





Q11. 기타사항

■ 광양항 입주시 은행 융자 및 제반 사항 ?

- 광양시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 제공
- 투자금액에 따라 정부에 한국 은행권에 유리한 금리 제공 가능
  - 대출금리는 시중금융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가능한 우대금리 적용
    ※ 융자금은 총 투자액에 포함 되지 않음
- 정책자금 융자 금액 및 방법은?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09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유형별 현황

구 분	융자범위	융자조건		
세부사업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원기준
사 업 전 환	· 신청일현재3년이상 사업영위하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중 · 모든업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연간30억원 (운전5억원)	8년이내 (운전5년)	· 금리:공자금리 △0.7% · 사업전환,무역조정계획승인
개발기술 사업화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중 해당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연간20억원 (운전5억원)	8년 이내 (운전5년)	· 금리:공자금리 △0.7% · 특허기술,이노비즈기업등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 지역전략산업및연고산업 및 지방중기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금리:공자금리 △0.7% · 비수도권소재 기업
지방중소기업 경쟁력강화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 ·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	연간30억원 (운전5억원)	8년이내 (운전5년)	· 금리:공자금리 △0.33% · 비수도권,지역전략/연고사업영위기업등

※ 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지식경제부 분기별대출금리 연동) 변동금리 적용 ('09.1월 현재 : 5.07%)
※ 상세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전남동부지부), T. 061-724-1066

■ 오염배출 업체의 배후단지 입주 가능여부 ?

● 오염물질 배출 업체의 광양항 입주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14조)
– 염색업종 등은 입주허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

■ 화물이 광양항에 반입/반출시 관세정책?

● 광양항의 FTZ 내의 모든 물품의 반입/반출 시에는 무관세 정책으로 FTZ 는 대한민국 국내가 아닌 외국지역과 같은 개념



광양항 이용 관련기관 연락처



1. CIQ기관 p.77
2. 해운대리점업 p.78
3. 외항선사 및 외국해운대리점 p.79
4. 터미널운영사 p.80
5. 항만하역업 p.080
6. 검 수 업 p.81
7. 컨테이너 수리업 p.81
8. 물품공급업 p.82

Gwangyang Port
Free Trade Zone Guidebook

1. CIQ 기관

(지역번호 : 061)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
광양세관	전남 광양시 중동로 20번지	797-1000	797-1091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순천·광양 출장소)	전남 순천시 덕월동 412-2	742-6060	742-4706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59-5	792-1139	792-9928
국립여수검역소 (광양지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76-2	792-0187	791-9483
국립식물검역소 (광양사무소)	전남 광양시 도이동 812번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	793-8131~2	793-8133
국립수의과학연구원 호남지원 (광양사무소)	전남 광양시 도이동 812번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	762-6291	762-6295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정청 (광주수입식품검사소)	전남 광양시 황길동 1390번지 월드마린센터 11층	792-9813~5	792-9816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광양출장소)	전남 광양시 도의동 812번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	791-8472	791-8473

2. 해운대리점업

(지역번호 : 061)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주)창세해운	전남 광양시 금호동 793 해운센타 D/4호	791-4095	791-4096
(합자)여진해운사	광양시 중동 1316-4 안산B/D 6층	793-9615~6	793-8604
광양선박(주)	광양시 중동 1318-3 해운빌딩 4층	798-7700	798-7788
남일해운(주)	광양시 중동 1321-14	791-0590	791-5145
삼익물류(주)	광양시 도이동 775번지 세방터미널 2층	794-3672~3	794-3674
선진해운(주)	광양시 중동 1623-16	793-7982	793-7985
연성해운(주)	광양시 중동 1361-13번지(3층)	793-2025	793-2026
해왕해운(주)	광양시 중동 1312-52	792-4477	792-4478

3. 외항선사 및 외국해운대리점

(지역번호 : 061)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주) 한 진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3-7	792-5401	792-1531
(주)이에스라인	광양시 금호동 793 해운센타B동 3호	793-2025	793-2026
(주)한려항만	광양시 금호동 793 해운센타 C/3호	792-3437	(0131)67-8779
(주)한성선박	광양시 도이동 775 세방터미널 2층	794-3092	794-3094
(주)한진해운	광양시 도이동 775	798-6700	798-6720
APL	광양시 도이동 775 현대상선(주) 광양터미널	798-1700	791-1702
MAERSK	광양시 도이동 775 (주)한진해운 광양터미널	794-0324	794-0329
MOL	광양시 도이동 775 현대상선(주) 광양터미널 3층	798-7652	791-0884
광양선박(주)	광양시 중동 1318-3 해운빌딩 4층	798-7700	798-7788
동남아해운(주)	광양시 도이동 775 (주)한진해운 광양터미널 2층	794-2052	794-2055
범양상선(주)	광양시 중동 1316-4	791-6540	794-6544
장금상선(주)	광양시 도이동 775 (주)한진해운 광양터미널 2층	794-1422	794-1420
조양상선(주)	광양시 도이동 775 세방기업(주) 광양터미날	794-3672	794-3674
중국해운	광양시 도이동 775 대한통운광양터미널 1층	793-3331	791-5559
현대상선(주)	광양시 도이동 775 현대상선(주) 광양터미널	798-7500	798-7606

4. 터미널운영사

(지역번호 : 061)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
한국국제터미널(주)	전남 광양시 도이동 780-2번지	798-1700	798-1885
GICT (광양인터내셔널 컨테이너터미널)	광양시 도이동 775	760-7700	760-7720
동부익스프레스	광양시 도이동 780-2	797-6000	797-6020
(주)대한통운	광양시 황길동 1392번지	797-5130	797-5139

5. 항만하역업

(지역번호 : 061)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
㈜한진해운 (광양물류지점)	전남 광양시 도이동 775	760-7701	760-7720
대주기업㈜	광양시 금호동 867-1	792-2445-6	792-3511
대한통운㈜	광양시 태인동 1654	797-5040~8	797-5049
대한통운㈜	광양시 도이동 775	797-5001	797-5019
동부건설㈜	광양시 도이동 780-2	797-6015	797-6020
동양제철화학㈜	광양시 태인동 1658	798-6114	798-6100
서강기업㈜	광양시 태인동 1655	792-1661	792-6402
세방㈜	광양시 태인동 1654-1	792-6331-3	791-7715
세방㈜	광양시 도이동 775	798-7300	792-1213
포스코터미날	광양시 금호동 867-1	793-7411-3	790-6386
포트엘㈜	광양시 금호동 648	790-7693	791-7690
한국국제터미널㈜	광양시 황길동 1379	798-1898	792-3422
한국허치슨터미널㈜	광양시 도이동 775	798-7586	798-7606

6. 검 수 업

(지역번호 : 061)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
㈜동광양산업	전남 광양시 도이동 780-2번지 사7호	791-8989	792-8933
㈜서보	광양시 금호동 793	791-8404-5	755-3746
광양해운㈜	광양 중동 1362-7(2층)	791-8688	791-8689
범양해무공사㈜	광양 금호동 793 해운센타 D-2	793-8605,6	792-5044
범양해무공사㈜	광양시 중동 1316-4 안산빌딩 6층	793-9611-2	793-8604
아르고마린토탈㈜	광양시 금호동 795	791-6658	791-5641

7. 컨테이너수리업

(지역번호 : 061)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
㈜광동기업	전남 광양시 광영동 770-12	791-9332	791-9399
㈜광양엔지니어링	광양 옥곡면 신금리 1507-83	772-7789,7950	772-6312
㈜성 운	광양시 도이동 775(한진해운터미날)	794-4335,6	794-4337
㈜씨엔컨서비스	광양시 도이동 775 한진해운내	794-2051	794-2055
대양기업㈜	광양시 도이동 775(대한통운내)	792-5831,2	792-7722
대한통운㈜	전남 광양시 도이동 775 대한통운내	798-9147	798-9205
동광테크	광양시 도이동 775번지 한진해운터미널내	794-6673,	794-6674
시노코엔지니어링㈜	광양시 도이동 780-2	011-9524-3860	-

8. 물품공급업

(지역번호 : 061)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유)광양마린	전남 광양시 광영동 720-12	791-7660	793-3050
(유)그린마린	광양시 광영동 721-3 그린상가1층	791-6970	791-6971
(유)금당종합해상	광양시 광영동 783-14	793-1723	793-1724
(유)남부실업	광양시 광영동 780-4번지	793-0705	793-0704
(유)뉴오리엔트마린	광양시 광영동 720-2	793-5156	793-3050
(유)여수항운	광양시 금호동 793	794-0400~2	794-3488
(유)유달마린	광양시 광영동 765-7	793-3198	794-3198
(유)태광종합해상	광양시 광영동 768-6	792-8808	792-8809
(유)한림통상	광양시 광영동 771-6	793-3477	793-5582
(유)한미상사	광양시 광영동 779-7	794-2996	794-2995
(유)한일종합가스	광양시 중동 1445-6	772-9117	772-9118
(유)호일마린	광양시 광영동 794-12	793-2180	793-2181
(주)소 천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772-8005	772-8006
(주)오리엔트마린	광양시 광영동 792-1	793-5106	793-5109
(주)제진통상	광양시 중동 1306-2	793-5520	-
(주)지엘코퍼레이션	광양시 둔덕동 503-6(3층)	794-7667	-
(주)풍생	광양시 광영동 766-7	793-1860	793-1861
(주)한진	광양시 태인동 1653-7	792-4500-3	792-1531
(합자)동광항업	광양시 광영동 723-7	792-6787	792-1430
㈜구 산	광양시 광영동 744-5번지	792-8511	792-8972
㈜뉴중앙마린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06-18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
㈜뉴중앙마린	광양시 광영동 719-10	772-7172	-
㈜동양	광양시 중동 1698-3	794-4181	794-4183
㈜비에스마린	광양시 성황동 281-1	795-8831	-
㈜오션마린	전남 광양시 중동 1845-5	793-5231	793-5230
㈜원일해상	광양시 광영동 769-6	792-8180	792-8187
㈜제진통상	광양시 중동 1306-2	793-5520	-
㈜종합기공	광양시 태인동 1648-8	-772-5904	772-5905
㈜중앙해상	광양시 광영동 721-7	793-8185	793-8184
㈜진미상사	광양시 광영동 682-24	792-0858	793-1901
㈜풍 생	광양시 광영동 766-7	793-1860	793-1861
㈜한미	광양시 광영동 768-1	793-2422	793-2421
㈜한미해상	광양시 광영동 723-7번지	793-2422	793-2421
㈜호남항업공사	광양시 금호동 793	793-8631,2	793-8633
금성기연㈜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07-72	772-0163	-
남양항운㈜	광양 금호동 793 해운센타 B동	791-4715	794-4718
남일물산㈜	광양시 성황동 587-1	794-4451	-
대경통상㈜	광양시 광영동 767-16	793-4701	793-4700
대명마린㈜	광양시 중동 1366-8	791-6017	794-4038
동광양농업협동조합	광양시 중동 1359-1	791-0700	791-0701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
동광양농업협동조합	광양시 중동 1679-1	-	-
동성항운㈜	광양시 금호동 793	794-4039	794-4038
방주해운㈜	광양시 광영동 768-1	794-6238	794-6239
방주해운㈜	광양시 중동 1369-1	-	-
선진해운㈜	광양시 중동 1623-16	793-7982	793-7985
에이스마트광영점	광양시 광영동 789-5	791-0031	792-0075
엠에스해운주식회사	광양시 광영동 793-1	791-3356	-
예스마트	광양시 광영동 현대2차A 상가1층	792-8071	-
조오스기업	광양시 중동 1356-1	792-7326	792-7315
준 인터내셔널(주)	광양시 중동 1308-7번지	795-6760	795-6761
케이마린㈜	광양시 중동 1619-6	792-0118	791-0103
케이에스야나세산업(주)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733-3	462-9741	462-9746
코리코엔터프라이스㈜ (구.한국선박공업㈜)	광양시 중동 1318-3 (해운빌딩)	798-7751	-
풍생통상㈜	광양시 광영동 768-6	793-1860	793-1861
한국선용품공급㈜	광양시 광영동 779-2	793-0151	793-0150
해왕해운㈜	광양시 중동 1647-1 선경빌딩 3층	792-4477	792-4478





麗水港, 光陽港
Yeosu Port, Gwangyang Port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범 례
1단계
2단계
3단계
Namhae Expressway
남 해 고 속 도 로
광 양 시
Gwangyang City
광양제철소
POSCO Gwangyang Works
Gwangyang National Industrial Complex
광 양 항
묘 도
Myodo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여수국가산업단지
Gwangyang Port
여수공항
여천해양파무소
여 수 시
Yeosu City
여수시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시외버스터미널
해경파출소
해양경찰서
해양교통관제센터
A
B
C
W
항박정박지
Anchorage Out of Harbour Limits
제1검역정박지
No.1 Quarantine Anchorage
Speed Limit Area
제3도선구역
제2도선구역
제1도선구역
대형등부표(예정)
D-2
D-1
제2검역정박지
No.2 Quarantine Anchorage
가 막 만
돌 산 읍
Dolsan-eup
하 동 군
Hadong County
남 해 군
Namhae County
고 흥 군
Goheung-gun
고 현 면
Gohyeon-myeon
소 라 면
Sora-myeon
화 양 면
Hwayang-myeon
남 면
Nam-myeon
이 동 면
Ido-myeon




어디에서나 돋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항만을 이끌어온 사람들, 그들이 이끌어 가는 광양항.
광양항을 세고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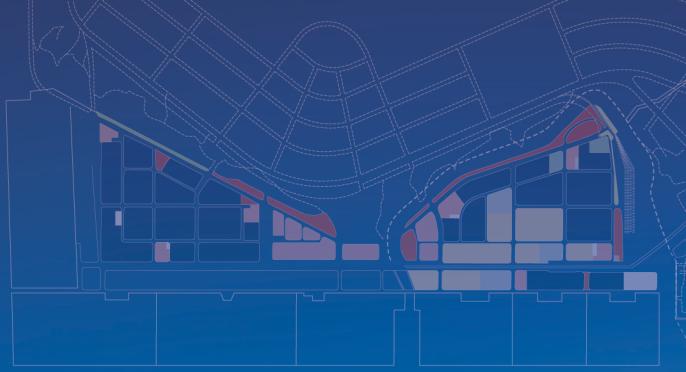

여수지방해양항만청 Yeosu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550-705)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23(여서동 222번지) Tel. 061)650-6000~2 Fax. 061) 654-235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KOREA CONTAINER TERMINAL AUTHORITY (545-030)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90번지 월드마린센터 Tel. 061) 797-4300 Fax. 061) 797-4340